V.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1. 만민공동회의 활동
- 2. 수구파 및 외세의 독립협회세력 탄압
- 3. 독립협회 · 만민공동회운동의 역사적 의의

V.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1. 만민공동회의 활동

1) 만민공동회의 성립

독립협회가 1898년 11월 5일 독립관에서 上院으로 개편된 중추원의 의관을 선출하고 '의회'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들은 서울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한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와 국회 개설에 기쁨을 누르지 못하여 아침부터 구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러수구파들은 독립협회와 개혁정부의 의회설립에 방관만 하지는 않았다. 친러수구파들은 만일 의회가 설립되고 입헌대의정치가 실시되어 독립협회와 개혁정부가 연합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단행하면 자기들은 정권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보고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었다. 《尹致昊日記》에 의하면 친러수구파의 배후에서 러시아측과 일본측이 이권침탈을 목적으로 그들을 조종하고 지원하였다.1)

개혁정부가 상원으로서의 새 중추원관제를 공포한 바로 그날인 11월 4일 밤, 황제에 의해 개혁정부에 일부 재진출한 수구파들인 의정부 찬정 趙秉式, 군부대신 서리 俞箕煥, 법부협판 李基東 등은 밀모하여, 광화문 밖과 시내 요소 요소에 소위 '匿名書'를 내다 붙이게 하였다.²⁾

익명서의 내용 요지는 조선 왕조가 이미 쇠퇴했으므로 만민공동하여 尹致 昊를 '大統領'으로 선출하면 정부와 서민이 모두 승복하고 국민이 각성하여 개명진보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었다.3)

¹⁾ 尹致昊、《尹致昊日記》5(國史編纂委員會, 1975), 1898년 11월 3・5일.

²⁾ 鄭 喬、《大韓季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57), 289쪽,

³⁾ 尹致昊,〈獨立協會의 始終〉(《新民》14, 1926년 6월호), 59쪽.

이 익명서는 수구파들이 예측한 대로 경무청에 발견되어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경악한 황제에게 이날 밤 궁궐에서 일부러 머물고 있던 조병식은 유기환·이기동 등과 밀모한 다음, 독립협회가 11월 5일 독립관에서 대회를 열어朴定陽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 李商在를 내부대신, 鄭 喬를 외부대신, 기타 독립협회 간부들을 대신과 협판으로 선출하고 국체를 共和政으로 개변하려 한다고 모함하여 상주하였다.4)

황제 고종은 독립협회의 자주·민권·자강의 개혁운동을 두려워하고 상소투쟁을 매우 꺼리고 있는 판국에 자기를 폐위하고 정치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즉각 독립협회 간부들을 긴급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조병식 등 수구파들은 경무사를 申泰休로부터 金幀根으로 교체하고, 조병식과 김정근이 밀의하여 20명의 독립협회 체포대상 지도자 명단을 작성하였다.5)

경무사 김정근은 경무청 병력을 총동원하여 11월 4일 밤중부터 11월 5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상재(독립협회 부회장, 의정부 총무국장), 정 교(독립협회 평의원 겸 사법위원), 南宮檍(독립협회 평의원 겸 사법위원, 내부 토목국장), 李建鎬(독립협회 평의원, 중추원 의관), 方漢德(독립협회 평의원, 농상공부 광산국장), 金 斗鉉(독립협회 평의원), 尹夏榮(독립협회 평의원, 중추원 의관), 廉仲模(독립협회 평의원, 탁지부 재무관), 韓致愈(독립협회 제소위원, 내부 참서관), 劉 猛(독립협회 평 의원), 玄濟昶(독립협회 평의원, 중추원 의관), 鄭恒謨(독립협회 평의원), 洪正厚(독립협회 평의원) 등을 체포하였다.6) 윤치호(독립협회 평의원) 등은 체포당하기 직전에 도피하였다.7)

金永義, 《佐翁尹致昊先生略傳》(京城 : 基督教朝鮮監理會總理院, 1934), 121~122 쪽의 익명서 사진.

⁴⁾ The Independent, November 10th, 1898, Molayo's Accounts of Recent Events in Seoul.

鄭 喬、《大韓季年史》上,289쪽.

⁵⁾ 法部 編,《起案》(奎 17277의 1·2) 제68책, 광무 2년 11월 7일, 訓令高等裁判所 第136號.

⁶⁾ 鄭 喬,《大韓季年史》上, 290\.

⁷⁾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8년 11월 4・5일.

경무관은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 사무소를 수색하여 독립협회의 모든 문서들과 도장들을 압수하였다.8) 또 사무원 崔允根을 체포해 갔으며, 회원이 사무소에 오는 것을 엄금했으나 兪鶴柱가 사무소에 나타나자 체포하였다.9)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대거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은신했던 趙漢禹(독립협회 평의원)·卞河進(독립협회 평의원) 등은 스스로 나타나 함께 체포당하기를 원했으므로 이들도 체포하였다. 그리하여 이 때 체포된 독립협회 지도자는 17명이요, 미체포자가 3명이 되었다.10)

조병식 등 수구파들은 원래 독립협회 지도자 20명을 밤중에 일거 체포하여 구명운동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사형에 처해버릴 계획이었다.¹¹⁾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를 체포하지 못하여 계획에 근본적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으므로, 조병식 등은 경무청에 다시 특명을 내려서 회장 윤치호의 체포에 혈안이 되었다.¹²⁾ 윤치호는 자기 집에서 11월 5일 새벽 5시경에 일어나 새 중추원 의관 선거준비를 하다가 순검들이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음을 알고, 비밀리 만들어 둔 뒷문으로 탈출하여 외국인 집에 은신해 버렸다.¹³⁾

또한 황제는 11월 5일(4일자 명의) 조칙을 발표하여, ① 독립협회가 취당해서 방자하게 조정을 꾸짖고 대신을 핍박했으며, ② 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고관들을 위협하여 참석시켰으니, ③ 독립협회를 비롯한 각종협회는 모두 혁파하며, ④ 또한 대신들도 '헌의 6조'는 혼자 아뢰거나 상소를올려도 될 것을 民會에 핍박당하여 '可'字를 썼으니 모두 파면하겠다고 발표하였다.14) 이 칙령에 의하여 독립협회는 불법화되고 해체당하게 되었다.

황제는 이어서 조칙을 통하여, 관민공동회에 나가서 헌의 6조에 '可'字를

⁸⁾ 法部 編, 《起案》(奎 17277의 1·2) 제68책, 광무 2년 11월 7일, 訓令高等裁判所 第136號.

⁹⁾ 法部 編, 《司法稟報(乙)》(奎 17279) 제3책, 광무 2년 11월 7일, 報告書 第58號. 《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 잡보〈경무사 첫 정사〉.

¹⁰⁾ 法部 編,《起案》(奎 17277의 1·2) 제69책, 광무 2년 11월 10일, 訓令高等裁判 所 第139號.

¹¹⁾ 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12일.

¹²⁾ 法部 編. 《起案》(奎 17277의 1·2) 제68책. 광무 2년 11월 7일. 訓令警務廳 第40號.

¹³⁾ 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5일.

¹⁴⁾ 法部 編, 《起案》(奎 17277의 1·2) 제68책, 광무 2년 11월 5일, 訓令警務廳 第44號.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9월 2일, 詔.

쓰고 서명한 의정부 참정 박정양, 법무대신 徐正淳, 의정부 참정 李鍾健, 농 상공부대신 金明圭, 탁지부대신서리 협판 高永喜, 의정부 참찬 權在衡 등을 모두 파면하였다.

황제는 그 대신 친러수구파들인 조병식을 의정부 참정 겸 임시서리 법부 대신 사무로, 閔種默을 외부대신 겸 임시서리 내부대신 사무로, 閔泳綺를 탁 지부대신으로, 南廷哲을 의정부 참찬으로, 朴齊純을 농상공부대신으로, 李鎬翼을 한성판윤으로, 김정근을 경무사로 정식 임명했으며, 한참 후에 다시 형 식상 趙秉世를 의정부 의정으로 임명하였다.15)

이에 따라 박정양을 행정수반으로 한 개혁파정부는 24일만에 붕괴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한 친러수구파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Alexis de Speyer) 등이 1897년말~1898년초 침략정책을 감행했을 때 야합했던 대한제국정부와 거의 동일한 친러수구파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6) 조병식을 중심으로 한 친러수구파정부는 11월 7일 내각회의에서독립협회의 혁파를 재확인하는 의결을 하고, 새로운 의회로서의 중추원관제와헌의 6조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결정하였다.17) 의회를 설립하여 전제군주정체를 立憲代議 군주정체로 개혁하고 국정 전반에 대개혁을 단행하려 한 독립협회와 개혁파들의 사업은 성공 한 발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친러수구파 정권이 수립되어 독립협회와 개혁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이었다.18)

이것은 황제 고종의 큰 배신이었다.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에 대하여 조 최 5조까지 내린 황제가 의회설립 직전에 친러수구파의 모략에 현혹되어 국 정개혁의 대사를 붕괴시켰을 뿐 아니라,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까지 비난하며 독립협회 해산을 명령하는 것을 보고, 독립협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황제의 독립협회에 대한 이러한 기습적 탄압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19)

^{15) 《}承政院日記》, 광무 2년 9월 22일, 詔.

^{16) 《}駐韓英國領事館報告》(Reports and Communications from the British Consul in Seoul), 1898년 11월 12일, 機密報告書 第108號.

¹⁷⁾ 議政府 編,《奏議》(奎 17703), 광무 2년 11월 7일, 奏本 第27號 諸會爲名一切革罷事.

^{18)《}駐韓日本公使館記錄》8(國史編纂委員會, 1989),〈本省往來信〉, 1898년 11월 8일, 發第75號, 獨立協會의 大臣排斥에 關亞 詳報.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는 일기에서 그의 배신감과 러시아·일본의 배후세력 흉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오늘의 官報는 독립협회의 해산과 현의 6조에 서명한 대신들을 면관시킨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것이 국왕이라니!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배신적인 어떤 비겁자라도 대한의 대황제보다 더 천박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친일 노예 愈箕煥과 친러 노비 조병식의 수중에 있다.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의 양자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모종의 살찐이권을 위하여 그들의 노예들을 지원하고 있다. 저주받을 왜놈들! 그들이 대한의 마지막 희망인 독립협회를 분쇄시키는 데 러시아인들을 돕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을 나는 참으로 희망한다(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5일).

실제로 〈주한일본공사관보고〉에서도 일본공사 대리는 대한제국 황제의 독립협회 해산에 사전 동의했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²⁰⁾

서울 시민들은 이때, 즉 1898년 11월 5일 독립관에서 실시할 동방 개벽이 래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구경하기 위해 아침 식사 후 독립관으로 갈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또한 투표권을 가진 독립협회 회원들은 모두 새벽에 일찍일어나서 25명의 새 중추원(상원) 의관 선거를 위해 독립관으로 향할 준비를하였다. 이 때 청천벽력과 같이 이상재 이하 17명의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경무청에 체포되었으며,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되었고, 박정양의 개혁정부가 붕괴되었으며, 조병식의 친러수구파정부가 재수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울분에 북받친 서울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배재학당 학생들이 독립관으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경무청 문 앞에 도착해서 항의시위를 시작하였다. 독립협회 회원들과 서울 시민들은 백목전 도매상가에 모여서 萬民共同會를 개최하고 경무청 문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다.1) 뒤이어 영어학교와 일어학교 학생들이 밀려왔다.22) 뒤이어 황국중앙총상회 회원들과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인 贊襄會 회원들도 경무청 문 앞에 도

^{19)《}駐韓日本公使館記錄》8,〈機密本省往信〉, 1898년 11월 16일, 機密 第50號 獨立 協會 示威運動에 關한 件.

²⁰⁾ 위와 같음.

²¹⁾ 鄭 喬、《大韓季年史》上、194쪽、

^{22) 《}皇城新聞》, 1898년 11월 8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착하여 합류하였다.²³⁾ 이날(11월 5일) 오전 경무청 문 앞에는 삽시간에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하여 시위를 하게 되었다.²⁴⁾

경무청 문 앞에서 서울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11월 5일 만민공동회가 형성된 것이었다. 경무청 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형성한 시민들은 林炳吉 등 5명을 총대위원으로 선출하여 경무사 김정근에게 독립협회 지도자 체포를 항의하고 사건 경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25) 경무사는 황제의 칙령에 따른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경무사와 한성판윤이 황제 칙령을 회중에게 낭독하였다.

시민들은 분개해서 다투어 연설을 한 다음 自願就囚(체포·투옥을 자원)하기로 결의하고, 체포당한 독립협회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들도 체포해 달라고 다투어 요구하였다.26) 경무사는 당황하여 시민들은 체포대상자 명단에 없으므로 체포할 수 없으니 해산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27) 그러나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후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제 새로이 만민공동회가 성립되어 조직적 운동이 시작된 것이었다.

2) 독립협회 지도자 석방운동

1898년 11월 5일 오후 서울의 경무청 문 앞에는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석방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함께 체포당하기를 자원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로 들끓게 되었다. 종로의 시전상인들은 철시를 해서 황제와 수구파정부의 처사 에 항의하였다.²⁸⁾

조병식 등 수구파와 황제는 이 예기치 않은 경무청 문 앞의 대규모 만민

^{23) 《}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 잡보〈만민충애〉.

²⁴⁾ The Independent, November 10th, 1898, Molayo's Accounts of Recent Events in Seoul.

^{25) 《}皇城新聞》, 1898년 11월 7일, 別報.

^{26)《}駐韓日本公使館記錄》8,〈本省往來信〉, 1898년 11월 8일, 發第75號 獨立協會의 大臣排斥에 關한 詳報.

^{27) 《}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 잡보〈만민충애〉.

^{2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本省往來信〉, 1898년 11월 8일, 發第75號 獨立協會의 大臣排斥에 關한 詳報.

공동회에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수구파정부는 경찰 무력으로 위협하여 시민을 해산시킬 수 있는지 시험하려 하였다. 수구파들은 순검을 내보내어 칼을 뽑아서 회원을 위협해 보았으나 회중이 일제히 달려들었으므로 순검들이 놀래서 경무청 안으로 도망하여 들어왔다. 만민공동회는 총대위원을 뽑아서 경무청 안으로 보내어 경무청의 무력사용 시도를 규탄하였다.29)

경무청 문 앞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친러수구파정부는 다급하여 시민들을 효유해서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완강히 해산을 거절하고 모닥불을 피워 놓고 철야농성을 시작하였다. 30) 밤은 깊어 가는데 곳곳에 핀 모닥불의 화광이 일대를 대낮같이 밝힌속에서, 만민공동회를 연 서울 시민들은 '독립협회 회원 석방' 아니면 '자원취수'해 줄 것을 소리 맞춰 절규하였다. 31) 서울에 와 있던 다수의 외국인들도 낮부터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대한제국 국민들의 애국적 의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32)

이날 밤 만민공동회에는 각 곳에서 의연금과 의연물이 답지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은 장국밥 3백 그릇을 보내어 추위를 막게 하였고,³³⁾ 신사 및 상인들이 은화를 보내어 온 것은 다 셀 수 없으며,³⁴⁾ 외국인들까지도 성원을 보내어 왔다.³⁵⁾ 이날 밤은 만민공동회에 참가한 전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경무청 문 앞에서 밤을 밝히었다.

만민공동회 제2일인 11월 6일에는 서울의 시전상인들이 모두 철시를 하고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였다. 경무청 관리들이 상가를 돌면서 개시를 명령했으 나, 시전상인들은 모두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충애하는 독립협회 회원들을 무단이 체포했으니 우리가 개시하여 장차 무엇할 것인가"고 항의하고 만민 공동회에 참가하였다.36)

^{29) 《}皇城新聞》, 1898년 11월 8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30) 《}駐韓英國領事館報告》(Report and Communications from the British Consul in Seoul), 1898년 11월 12일, 機密報告書 第108號.

³¹⁾ 鄭 喬,《大韓季年史》上, 296쪽.

^{32) 《}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 잡보〈만민충애〉.

^{33) 《}皇城新聞》, 1898년 11월 8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³⁴⁾ 鄭 喬,《大韓季年史》上, 296쪽.

^{35) 《}독립신문》, 1898년 11월 8일, 잡보〈만민수신〉.

³⁶⁾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8년 12월 6일.

조병식 등 수구파정부는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고 독립협회 세력을 탄압할 대책을 수립하기에 부심하였다. 우선 조병식 등은 이날 서울에서 발간되는 《독립신문》·《황성신문》·《제국신문》·《매일신문》 등이 모두 독립협회와 관계있으니 이 기회에 혁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러나수구파 대신 다수가 우선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일이 시급한데이를 위해서는 각국 공사관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으므로이 신문폐간 문제는 뒤로 미루어졌다.37)

수구파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 를 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날 밤에도 만민공동회를 성립시킨 시민들은 경무청 문 앞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철약하였다.

만민공동회 제3일인 11월 7일부터는 시민들의 만민공동회 투쟁을 배경으로 하여 개혁파 관료들이 서서히 반격을 시작하였다.

이날 조병식과 민종묵은 국내의 금광·석탄광·철광 등의 이권을 러시아에 양여하여 그 대가로 러시아공사관의 세력을 얻어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 공동회를 해산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外部 번역관이 이 사실을 만민공 동회에 알렸으므로 만민이 크게 놀라 격렬한 반대투쟁을 준비하며 술렁이었기 때문이 이 계획은 저지되었다.³⁸⁾

이날 아침 6시경에 경무청은 이상재 등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고등재판소로 이송하였다. 군대 1개 중대와 순검 80여 명이 이를 경비하였다. 시민들은 이에 따라 경무청 문 앞으로부터 고등재판소로 장소를 옮기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외부대신 민종묵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는 데 양해를 구하기 위해 각국 공사관을 순방하였다. 우선 영국총영사와 미국공사가 군대동원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민종묵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데 각국 공사의 양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만민공동회는 梁弘默 등 3인을 총대위원으로 고등재판소장에게 보내

³⁷⁾ 鄭 喬、《大韓季年史》上, 298\.

³⁸⁾ 鄭 喬, 《大韓季年史》上, 303쪽.

어 이상재 등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재판은 반드시 공개재판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오후 5시에 경무관이 황제의 조칙을 공포하면서 만민공동회의 해산을 종용하였다. 만민공동회는 "17명과 함께 사생을 한가지로 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만민공동회는 총대위원 100명을 선정하여 서울 시내 각 처에 보내어서 나라의 위급한 형편과 만민의 충군애국의 목적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만민공동회에의 더 많은 참가와 지지를 요청하였다.39)

이날 고등재판소 문 앞에는 시민들의 참가가 증가함으로써 만민공동회는 더욱 대규모화되었다. 특히 각 학교 학생들은 學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시민들의 독립협회 지도자 17명 석방 요구를 지원하였다. 40) 또한 시민들의 의연금 지원도 더욱 증가하였다. 한 인사는 거금 300원을 보내왔으며,41) 심지어 콩나물장수 노파도 콩나물을 판 대금 2원을 보내왔고, 한 영남유생은 의연금 4원을 먼 곳에서 송금해 왔다.42) 이날 밤 시민들은 인화문 앞으로 나아가 대궐을 에워싸고 상소시위를 할 것을 논의했으나, 이것이 수구파들에 의해 '亂民'으로 몰려 탄압할 구실을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류키로 하였다.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체포된 후 민심이 격앙하고 만민공동회에 참가하는 시민이 수만 명에 이르자, 수구파와 황제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민들이 추위에도 물러가지 않고 도처에서 철야하며 밤에는 장작불을 피워 추위를 막으면서 불빛이 하늘에 치솟고 구경꾼들까지 산처럼 모이자 조병식 등 수구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황제도 독립협회 지도자들의 구속을 후회하게 되었다.43) 황제 고종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보고 그의 전형적 정책인 '발뺌'을 시작하였다. 법부협판 겸 고등재판소장 이기동

³⁹⁾ 鄭 喬,《大韓季年史》上,304쪽.

^{40)《}駐韓日本公使館記錄》8,〈本省往來信〉, 1898년 11월 8일, 發第75號 獨立協會의 大臣排斥에 關한 詳報.

⁴¹⁾ 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7일.

⁴²⁾ 鄭 喬、《大韓季年史》上、305쪽、

⁴³⁾ 鄭 喬, 위와 같음.

은 체포된 독립협회 지도자 중 7명을 골라 처형할 것을 여러 차례 황제에게 밀청했으나, 황제는 만민공동회를 꺼리어 이를 거절하는 한편, 이날 밤 11월 8일자로 한규설을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장에 임명하여 정책 전환을 준비하였다.44)

만민공동회 제4일째인 11월 8일부터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은 찬비를 맞으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고등재판소 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날 새벽 황제는 한성판윤을 통해 칙유를 만민에게 내리면서, 백성들의 소원을 장차 들여줄 터이니 소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45) 또한 경무사 신태휴는 황제의 입장을 설명하여, 황제도 회민들의 주장을 통촉하고 있으나 익명서 안에 있는 '大統領'이라는 불온문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하고, 익명서를 회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46) 이것은 황제가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구속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상소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황제 자신이 후퇴할 뜻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황제가 수구파의 무력탄압 주장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황제는 아직도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이기동을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하여 병권을 주었다.47) 또한 조병식은 군부에 명령을 내려 군인들로 하여금 각 방곡을 엄밀하게 파수하도록 하고, 만약 만민이 인화문 길로 향하는 경우에는 즉각 총창으로 도륙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군인들까지도 이제 모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조병식은 이날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전원 流配로 판결시키려고 획책했으며, 미리 탁지부에 유배죄인 발부경비 1,000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탁지부 관리들도 이제는 누구도 그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48)

한편 만민공동회는 이날 밤 柳 瑾이 지은 상소를 올리었다. 그들은 이 상소에서 ① 체포된 17인은 만민과 더불어 공도 일체이고 죄도 일체인데 황제

^{44) 《}皇城新聞》, 1898년 11월 9일, 官報.

^{45)《}皇城新聞》, 1898년 11월 9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⁴⁶⁾ 鄭 喬,《大韓季年史》上,305~306\.

⁴⁷⁾ 鄭 喬,《大韓季年史》上,308\.

⁴⁸⁾ 鄭 喬,《大韓季年史》上,309\.

의 벌이 17인에게만 미치고 만민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은 의혹이며, ② 경무사가 만민에게 보인 익명서의 대통령 운운은 간세배가 꾸민 모함이고, ③ 만민이 보도 듣도 못한 것을 유독 한사람만 먼저 보아 보고했으니 이 자가 우리를 모함하고 나라를 문란케 하는 자인 바, ④ 신들과 이 무고자를 함께 청천백일하에 재판하여 충신과 역적의 분별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49)이날 밤도 만민공동회의 시민들은 지도자 17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고등재판소 문 앞에서 철야하였다.

만민공동회 제5일째인 11월 9일 오전 9시경 군부대신서리 유기환은 아직도 군대동원에 의한 만민공동회 탄압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친위대 제3대대의 2개중대 병력을 대회장에 투입해서 충돌을 유도하며 탄압을 획책했다가 실패하였다.50) 이날도 아침부터 날이 어둡고 찬비가 소소히 내리어 회민의옷을 적시었다. 회중들은 찬비를 맞으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더욱 의기가분발하였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이를 보고 의연금을 계속 보내어 왔다. 예컨대 茶洞에 사는 차召史는 집 판돈 100원을 내놓아 만민을 감격케 했으며,51) 한 나무장수는 장작 수십 바리를 실어와서 밤을 지새는 땔감으로 쓰도록 했고, 한 과일장수는 단배 3석을 보내어 회원의 목마름을 축이게 했으며,술장수는 새로 빚은 술 수십 통을 보내어 추위를 이기는 데 돕도록 했고, 심지어 걸인 한 사람도 1원을 보조했으며 청국상인까지도 감동하여 4원을 보조하였다.52) 또한 서울의 시전상인들은 이날도 철시를 단행하여 만민공동회를 적극 성원하였다.53)

이날 찬비속에서의 만민공동회의 시위와 시민의 호응을 보고 구경나온 외국인까지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54) 외국공사·영사들도 감동하여 외부를 방문해서 만민공동회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였다.55)

^{49)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9월 26일, 前承旨尹吉炳等疏.

^{50) 《}독립신문》, 1898년 11월 10일, 잡보〈군인충돌〉.

⁵¹⁾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8년 11월 11일.

^{52) 《}皇城新聞》、1898년 11월 11일、別報〈萬民共同會續錄〉、

^{53) 《}독립신문》, 1898년 11월 10일, 잡보〈시민감격〉.

⁵⁴⁾ 鄭 喬、《大韓季年史》上、311쪽、

^{55) 《}독립신문》, 1898년 11월 11일, 잡보〈외부전모〉.

뿐만 아니라 만민공동회에 대처하여 파수를 보던 군인들까지도 독립협회를 지지하고 만민공동회에 동정을 표시했으며,56) 이날 밤 만민공동회를 포위하고 있던 200명의 군인들은 스스로 해산하여 돌아가 버렸다.57) 심지어 만민 공동회를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나온 한성부 관리들까지도 친러수구파정부의 모략을 개탄하고 만민공동회에 동정을 표시하였다.58)

이날 밤은 찬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이튿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민들은 추위와 찬비속에서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철야하였다.⁵⁹⁾

만민공동회 제6일째인 11월 10일에는 대세는 결정적으로 만민공동회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황제는 이날 오후 5시경 한성판윤을 시켜 회중의 민원이무엇인지 알아오게 하였다. 만민공동회 회중은 ① 불량배들과 더불어 재판받아 충신과 역적을 밝히고, ② 헌의 6조와 조칙 5조를 즉각 실시하며, ③ 혁과한 독립협회의 복설을 요구한다고 응답하였다.60)

황제 고종은 마침내 민의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날 조병식·민종묵 등에게 해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여 이들을 해임하였다. 황제는 이어서 李鑓永을 의정부 참정으로, 농상공부대신 박제순을 외부대신으로, 학부대신 李道宰를 임시서리 내부대신 사무로 임명했으며, 유기환을 임시서리 군부대신 사무에서 해임하고 군부협판 趙東潤을 그 자리에 임명했고, 경무사 신태휴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閔丙漢을 임명하였다.61) 이로써 만민공동회가 규탄하는 익명서 조작의 장본인들이 대신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다른 수구파들이 기용된 것이지, 개혁정부가 수립된 것은 전혀 아니었다.

황제는 이날 오후 7시에 법부대신 한규설을 불러들여 독립협회 17명의 재 판이 어떻게 되었는가 묻고, 재심까지 끝났다는 대답을 듣자, 즉시 돌아가 판결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한규설을 재판장으로 한 고등재판소

⁵⁶⁾ The Independent, November 12th, 1898, Molayo's Reports and Reflections.

^{57) 《}독립신문》, 1898년 11월 11일, 잡보〈관인병정〉.

^{58) 《}독립신문》, 1898년 11월 11일, 잡보〈관인개탄〉,

⁵⁹⁾ 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9일.

^{60) 《}皇城新聞》, 1898년 11월 11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⁶¹⁾ 鄭 喬,《大韓季年史》上, 312쪽.

재판부는 ①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칙령을 위반하여 '離次開會' 했으며, ② 대신을 위협하고 재판을 강청한 죄가 있으므로 17명 전원을 笞 40에 처한다고 선고했으며, 17명 중에서 칙임관·주임관으로서 實職이 있는 사람만 贖錢을 물도록 하고 나머지는 속전도 면제한다고 결정하여 17명 전원을 즉각 석방하였다.62) 이것은 극히 가벼운 벌금형으로서, 거의 무죄선고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만민들은 황제와 수구파의 시위대 및 경무청의 무력 위협과 찬 겨울비속에서도 철야하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만 6일간의 불굴의 투쟁으로 17명의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되찾고 감격에 넘쳐 서로 붙들고 울며 서울 장안이울리도록 만세를 소리쳐 불렀다.63) 석방된 17명 독립협회 지도자를 대표하여이상재가 조한우를 대리로 시켜 만민의 투쟁에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하였다.64)

만민공동회는 성립과 동시에 찬 비바람속에서 만 6일간의 철야시위의 간 구한 투쟁으로 황제와 수구파에 의해 체포 감금된 독립협회의 17명 지도자 들을 석방시킨 대승리를 쟁취한 것이었다.

3) 독립협회 복설운동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석방에 성공한 후, 이에 물러서지 않고 익명서를 조작하여 독립협회의 애국자들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던 간세배들을 조사 재판하여 충신과 역적을 판별하고 독립협회의 복설을 윤허받은 후에야 물러가기로 결의하고, 만민공동회를 종로로 옮겨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석방된 독립협회 지도자의 일원으로 玄濟권이 회장 윤치호를 방문했을 때, 윤치호가 강력하게 ① 헌의 6조의 실시, ② 조병식 등의 추방, ③ 독립협회의 복설이 달성될 때까지 만민공동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따른 것이었다.⁽⁵⁾

⁶²⁾ 議政府 編, 《法部來去文》(奎 17795) 제5책, 광무 2년 11월 12일, 判決宣告書.

^{63) 《}독립신문》, 1898년 11월 12일, 〈선고방청〉.

⁶⁴⁾ 鄭 喬、《大韓季年史》上、315쪽.

서울 시민들과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회원들은 종로(운종가)로 장소를 옮기어 만민공동회 제7일째인 11월 11일에도 만민공동회 대회를 계속하였다.

황제와 정부측은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석방하면 만민공동회가 해산되리라고 예측했다가, 만민공동회가 여전히 시위를 계속하여 익명서 조작에 간여한 수구파 인사들의 처벌을 요구하자 크게 당황하였다. 황제와 정부는 만민공동회 장소에 여러 차례 고관들을 보내어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만민들은 이를 거절하고 철야하면서, 11월 12일 韓致愈가 지은 상소를 尹吉炳을소수로 하여 올려① 간세배의 재판,② 헌의 6조의 실시,③ 백성들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에 의한 정부 재조직,④ 독립협회 복설,⑤ 조병식·민종묵등 2흉의 집권 때의 대외관계문서 공람 등을 요청하였다.66)

황제 고종은 만민공동회가 해산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초점이 독립협회 복설에 있다고 판단하고, 독립협회 복설을 억제하는 대신 언로를 열어 대체해 주는 방안으로 칙령 제37호로서 긴급히 중추원 관제를 개정하였다. 이 재개 정된 중추원 관제는 의회의 성격을 완전히 없애고, 인민협회에 의한 민선의 관 선출제도도 삭제해서 의관들을 모두 황제가 칙임하도록 만든 것이었다.⁶⁷⁾

또한 이때 황제는 관민공동회에 출석하여 '可'字를 쓴 죄로 해임된 박정양·徐正淳·李鍾健·金明圭 등의 징계를 특면하고, 이종건을 중추원 의장으로 임명하였다.68) 이것은 모두 만민공동회의 투쟁에 밀리어 황제와 수구파가 타협책으로서 독립협회의 복설을 허락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만민공동회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독립협회 복설과 헌의 6조 실시와 간세배 재판이 있을 때까지 만민공동회를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만민들은 만 9일 동안 연일 철야하면서 종로에서 시위를 계속하다가, 10일째인 11월 14일에는 보부상들의 동태 보고를 듣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高永根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추대하고 조직을 강화하였다. 고영근은 원래 황국협회 부회장직을 맡았다가 황국협회가 보부상으로 구성된 수구파의

⁶⁵⁾ 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10일.

^{66)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9월 29일, 前承旨尹吉炳等疏,

⁶⁷⁾ 議政府 編、《奏議》(奎 17703) 제24책, 광무 2년 11월 12일, 奏本 第238號 및 中樞院官制中 改正에 關한 件.

^{68)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9월 29일, 詔.

폭력단체임을 알고 황국협회를 탈퇴하여 만민공동회에 참가해서 적극 활동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만민공동회는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11월 15일에는 대회장소를 종로에서 仁化門 앞으로 옮기었다. 인화문 앞에서 다시 金嘉鎭을 소수로 하여 한치유가 지은 상소를 올리었다. 그들은 이 상소에서 ① 독립협회 복설, ② 조병식·민종묵·유기환·이기동·김정근 등 5흉의 처벌, ③ 헌의 6조의 실시, ④ 어질고 능력있는 인물의 대신 임명 등 4개항을 실시하여 나라를 평안히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⁶⁹⁾ 그 사이 전국 각지에서 민중들의 만민공동회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계속 증가하여 의연금과 의연품이계속 답지하였다.

황제와 정부는 만민공동회가 11일째인 11월 15일에도 철야하면서 그들의 요구조건을 강경하게 주장하자 독립협회 복설이 불가피함을 알고 독립협회의 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酌定範圍'를 하여 독립협회 복설을 허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만민공동회는 12일째인 11월 16일에 상소를 올려 독립협회 복설의 조건으로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 작정범위하려는 것은 독립협회와 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무조건의 독립협회 복설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70)

한편 수구파들은 이기동·길영수·유기환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보부 상들을 서울로 불러 올리면서 황국협회 세력을 강화하여 만민공동회를 공격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기동 등은 황제에게 만민공동회가 대궐을 둘러싸 고 반드시 불란서혁명과 같은 난을 일으키려 한다고 밤낮으로 모함하여 상 주하였다.

만민공동회 제13일째인 11월 18일에도 시민들은 철야시위를 계속하면서 만민공동회 요구조건의 실행을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魚溶善은, 지금 관 민이 합동해서 백성과 나라의 대사를 도모하여 나아가려 하는데 백성(평민)만 이 사찰과 사무원을 선정하여 주야로 노고하고 搢紳은 한사람도 참석치 아니 하니, 진신으로 도사무장 1인을 정하고 사무장 15인을 정하여 사무장 1인이

^{69)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0월 2일, 議官金嘉鎭等疏.

^{70)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0월 4일, 從二品高永根等疏.

사무원 9인씩을 선정하여 사무를 조직하자고 제안하였다.71) 이에 회중은 金 宗漢를 도사무장으로 정하고 그 나머지 여러 사람으로 사무장을 정한 후에 여러 관원과 진신들에게 8백여 장의 청첩을 발송하였다. 이에 응하여 만민공 동회에 나온 진신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72)

이 때 만민공동회에 적극 참가한 진신의 명단을《獨立協會沿歷略》에 의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早회장 또는 회장대리급:劉元杓・金教獻・南宮檍・柳 瑾・金石恒・高永根 등
- ② 도총무부장・총무장・부총무급: 劉 猛·玄 采·鄭淳萬·羅 喆 등
- ③ 편집부장급:張志淵・尹孝定・成樂英・方漢德 등
- ④ 총무부 과장 및 부장급:鄭雲復・金在豊・鄭耆朝・尹履炳・安昌浩・呂永祚 등
- ⑤ 재무부 과장 및 부장급:金明濬・李昇薫・徐相大・申奎植・徐相敦・許 蔿・ 宋秀萬 등
- ⑥ 선전부 과장 및 부장급:梁甸伯・尹益善・金福漢・崔東植・慶光國・吳基鎬・ 金寅植・李承晩・羅壽淵 등
- ⑦ 서무부 과장 및 부장급:李東輝·元世性・申敬植・奇宇萬・李學淳・池錫永・ 李晩禱・全德基・崔永年・李學在 등
- ⑧ 지방부 과장 및 부장급: 奇山檮・安秉瓚・徐相八・梁在根・鄭應髙・李鍾臺・ 弘在七・沈日澤・林炳恒・李根雨 등
- ⑨ 내무부・문서부 서기장 및 과장・부장급: 李商在・申興雨・金奎植・申采浩・ 李起賢 등
- ① 조사부・외무부 과장 및 부장급:李會臣・趙匡夏・李敏軾・李敏燮・趙悳夏・ 朴汶圭・閔智鎬・李鎬成・李龍九・李晦九 등
- ② 교섭 외교부 과장 및 부장급:李夏榮・尹致昊・李采淵・李漢應・申能雨・朴 容萬 등
- (3) 문교부 과장 및 부장급:金允植・朴殷植・呂圭亨・李鍾永・申箕善・李道宰・李建昌 등(《獨立協會沿歷略》 중의〈獨立協會〉 참조).

^{71) 《}皇城新聞》, 1898년 11월 18일, 雜報〈會上消息〉.

⁷²⁾ 鄭 喬,《大韓季年史》上, 331쪽.

만민공동회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진신들까지 간부급으로 흡수하여 조직을 정비 강화하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 시민·민중단체가 점차 독립협회로부터 일단 분리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크게 발전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민공동회는 이렇게 강화된 조직을 갖고 인화문 앞에서 연 13일에 걸쳐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 상소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동안에수구파들은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황국협회 세력을 전국에서 서울로집결시켜 만민공동회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풍운이 바야흐로서울 하늘에 들어오고 있었다.

4) 황국협회의 공격 격퇴

원래 황국협회는 1898년 7월 7일 鄭洛鎔을 회장으로 하여 황태자(실제로는 황제)가 보낸 1,000원의 하사금으로 창립된 단체로서, 창립초에는 지방 행상 인들인 보부상들의 권익단체의 성격을 표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황국협회는 실제로는 처음부터 수구파들이 의식적으로 독립협회에 대항하기 위해 창립한 단체로서, 황국협회의 보부상들은 황제와 수구파들의 정치적 폭력단체로 전화되고 있었다.

황제 고종이 11월 5일 독립협회를 혁파할 때 모든 협회를 혁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므로, 황국협회도 인민협회의 하나로 간주되어 함께 혁파되었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에 의해 만민공동회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석방과 독립협회 복설을 요구하게 되자, 황국협회는 실제로는 해산하지 않고 수구파의 비호와 조종을 받으면서 만민공동회를 공격하기 위한 본격적 도발행위를 시작하였다.73)

서울에 모인 보부상들은 11월 16일에는 머리에 패랭이(平凉笠)를 쓰고 그위에 목화송이를 꽂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시도하였고, 총대위원을 농상공부에 보내어〈商務規則〉의 개정과 인가를 요청하였다.

또한 11월 18일과 19일에는 전국 각도로부터 보부상들이 줄을 이어 서울

⁷³⁾ 尹致昊, 〈獨立協會의 活動〉(《東光》26, 1931년 10월호), 36쪽.

로 들어와서 그 수가 수천이 되었으며, 경향 인심이 크게 소동하고 두려워하였다. 특히 11월 19일 보부상들은 농상공부 문 앞에서 대회를 열고 연좌시위를 하면서 인가장의 발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황제가 농상공부대신 김명규에게 전화로 칙령을 내리어 황국협회의 〈상무규칙〉인가장을 발급해 주도록 명령했으므로, 농상공부대신은 부득이하여 이를 발급해 주었다. 이것은 사실상 황제의 특명에 의해 황국협회의 복설과 보부상들의 특권을 허여한 것이므로 이에 보부상들은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다.74)

보부상들은 11월 20일 더욱 의기양양하여 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그들의 영수 吉永洙를 가운데 놓고 전후 좌우에서 호위하면서 종로를 향하여 시위행진을 감행하였다. 길영수는 마치 친위대 병정을 지휘하는 것과 같이 호령을했으며, 그 위세가 전장의 군대와 같아서 길가의 사람들이 감히 길을 범하지못하였다. 행렬이 종로에 도착하자 길영수는 마치 군인들 중의 대장과 같이정좌하고 보부상들이 燭籠과 목봉(나무몽둥이)을 들고 그 좌우에 나열한 것이위세 당당하였다. 그들은 황제가 정책상 형식적으로 고등재판소에 구금한 이기동과 연락하여 그의 지령을 받으면서 각 방곡에 고시를 붙이고 시위에 들어갔다.75) 그리하여 11월 20일 仁化門 앞에서는 시민들의 만민공동회가 연16일째 벌어지고, 종로에서는 만민공동회에 대항해서 목봉으로 무장한 황국협회의 시위가 벌어져 사태는 매우 험악하게 되었다. 각국 공사관들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대비하기에 급급하였다.76)

1898년 11월 21일 마침내 충돌의 날이 밝았다.

만민공동회 제17일째인 이 날에도 만민들은 인화문 앞에서 철야 중에 총대위원을 정부에 보내어 정부 대신들을 초청해서 보부상의 폐해 작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정부 대신들은 보부상 단체의 혁파와 만민공동회의 피격 방지를 확약하고 돌아갔다.77) 정부 대신들이 돌아간 얼마 후 이른 아

⁷⁴⁾ The Independent, November 22, 1898, Molavo's Reports.

^{75) 《}皇城新聞》, 1898년 11월 19일, 雜報〈高等公開〉.

^{76) 《}駐韓英國領事館報告》(Reports and Communications from the British Consul in Seoul), 1898년 11월 25일, 機密報告書 第112號.

[《]駐韓日本公使館記錄》8,〈機密本性往信〉, 1898년 12월 10일, 機密 第53號 事變 에 對한 一般的 處置 具報의 件.

침, 보부상들은 종로에서 대회를 열고, 洪鍾宇가 등단하여 만민공동회 회장 고영근을 규탄하는 격렬한 선동연설을 한 다음 "일제히 인화문 앞에 진격하여 만민공동회를 처부수자"고 외치었다. 보부상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호응한 다음 전원 몽둥이로 무장한 보부상 2,000여 명을 두 대로 나누어 오전 10시쯤 만민공동회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제1대의 약 1천여 명의 보부상들은 길영수의 지휘하에 정동 병문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경운궁 앞에 대로의 양면에 있던 소수의 파수 병정과 순검들이 이를 막다가 곧 물러서 버렸으므로 보부상들은 거의 저지를 받지 않고 만민공동회를 향하여 난입해 들어왔다. 제2대의 다른 1천여 명의 보부상들은 홍종우의 지휘하에 新門 고개를 넘어 들어오다가 병정과 순검들에게 처음에는 약간 저지되었으나 곧 이들이 밀리어 물러서자, 수미협공해서 인화문 앞에 만민공동회를 습격하였다.

이 때 시위대 대장 金明濟와 경무사는 칙령을 비밀리 받아 병정과 순검들로 하여금 보부상들이 만민공동회를 향해 진격하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였다. 보부상들의 만민공동회 습격의 배후에는 고종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78) 의기충천한 보부상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만민공동회 대회장을 습격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만민들을 난타하였다.

날씨가 흐리고 날이 채 밝지 않은 새벽인데 찬바람까지 불어닥치고 있는 중에, 17일째 연일 철야한 만민들은 애국심뿐이었지 정부의 말만 믿고 황국 협회의 습격에 대한 방어대책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으며, 손에는 무기가 될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물푸레나무 몽둥이로 잘 무장한 보부상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도저히 대항할 도리가 없었다. 보부상들의 몽둥이에 난타당한 만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몽둥이를 피하려고 이러 저리 쫓기게 되어 부상자가 부지기수로 나왔으며, 울음소리가 진동하여 만민 공동회 대회장은 삽시간에 전쟁마당을 방불케 하는 참담한 수라장이 되었다. 梁弘默 등 청년들이 길영수 등에 대항을 시도하다가 배재학당 안으로 쫓겨

⁷⁷⁾ The Independent, November 22, 1898, Molayo's Reports.

^{78)《}駐韓日本公使館記錄》8,〈機密本省往信〉, 1898년 11월 23일, 機密 第52號 韓國 近來狀況 具報 및 이에 關한 卑見具申의 件.

들어 갔으며, 일부의 만민들은 다급하여 바로 옆인 독일영사관 등 외국공관으로 담을 넘어 피신하였다. 이른 새벽 보부상들의 한바탕 몽둥이 폭력에 만민공동회는 막대한 부상자를 내고 패퇴하였다.⁷⁹⁾ 보부상들의 만민공동회 기습이 보부상들의 승리로 끝나자, 궁중에서는 이날 아침 백반과 육탕을 보내어 보부상들을 격려하였다.

황제와 수구파는 이것으로 만민공동회는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지도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은신상태이고, 회원들은 연 17일째의 철야시위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다가, 보부상들의 기습 난타로 많은 부상자를 내고 쫓기어 해산되었으므로, 이제는 시위대와 경무청으로 하여금 재집회만 못하도록 경비만 시키면 모든 것은 수구파의 전략대로 들어맞을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수구파와 황국협회 보부상들의 승리는 잠깐이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른 새벽 보부상들이 인화문 앞의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는 소식이 성내에 퍼지자 격분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정동 병문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상인들까지도 모두 철시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여들기 시작하여 정동 병문에 모인 시민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격분한 시민들은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다가 성처럼 쌓아놓고 보부상들이 쳐들어오면 타살하려고 기다렸다. 서울 시민들의 분위기는 마치 혁명 전야와 같이 들끓어 올랐다.

서울 시민들의 봉기에 놀란 보부상들이 사태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음을 느끼고 오후 2시쯤 병정들의 호위 아래 新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분노한 시민들은 돌을 던지며 추격하여 마침내 신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신문의 파수 병정은 상부의 명령을 받고 보부상들은 통과시켜 주었으나 시민들은 제지하여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 버렸다. 보부상들은 돈의문 밖에 있는 전 경 기감영 건물에 쫓겨 도착해서 겨우 한숨을 돌리었다.80)

그러나 분노를 누르지 못한 시민들은 이번에는 다시 종로에 모여서 대규 모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인 만민들은 인화문 앞에서 철야상

⁷⁹⁾ 위의 책.

⁸⁰⁾ 위의 책.

소시위를 할 때 모인 만민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대규모의 대회였다.

양홍묵 등이 등단하여 정부와 보부상이 야합해서 만민을 습격했다고 보고 연설을 하였다. 다른 시민들도 다투어 올라가 정부와 수구파에 대한 성토연 설을 하였다.

이에 더욱 분노한 서울 시민들이 궐기하여 보부상들을 완전히 분쇄해 버 리려고 돈의문까지 이르렀으나, 병정들이 그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만 민들의 울분을 이기지 못하는 호곡소리가 장안을 울리었다.

이 때 황제와 수구파들은 서울 시민들이 봉기하여 만민공동회를 지지하면서 보부상들을 몰아내어 보부상들이 쫓겨갔으며, 만민들이 다시 더 큰 규모로 종로에 모였다는 보고를 받고 매우 당황하였다. 황제는 경무사와 한성판윤을 만민공동회에 보내어 시민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시민들은 오히려 경무사를 포위하고 위협했으므로 긴급히 피신하는 형편이었다.81)

또한 이 때 일찍 서울 시내에 나무를 팔러온 나무장수들이 나무를 팔다가 만민공동회의 피습당한 소식과 이기동 등의 행패 소식을 듣고 분노를 이기 지 못하여 이기동·조병식·민종묵·홍종우·길영수·유기환·윤용선·민영 기 등의 가옥을 파괴해 버렸으며, 보부상들의 도가인 信義商務所도 파괴해 버렸다.82)

만민들은 시내의 곳곳에다 친러수구파 대신들과 보부상을 규탄하는 벽보를 붙이었다. 전 서울 시민들이 다투어 의연금과 의연품을 보내어 이날 종로에서 철야하는 만민들을 지지하고 성원하였다.83)

만민공동회 제18일째인 11월 22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더욱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로에 모여들어 수만 명의 대규모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수만의 시민들은 각기 성내 5署의 깃발에 따라 나누어 대열을 지어서 기세를 올렸다. 분노한 시민들의 이러한 대규모의 자발적 궐기는 전에 없었던 일이었다. 만일 정부나 수구파가 이들에게 도발행위를 한다면 금방 혁명이 일어날 기세였다.84) 황제와 정부 대신들은 이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봉기에 경

⁸¹⁾ 鄭 喬,《大韓季年史》上, 339쪽.

^{82) 《}皇城新聞》, 1898년 11월 22일, 別報.

⁸³⁾ 鄭 喬,《大韓季年史》上,341쪽.

악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다.85)

이 때 마포에 사는 시민 하나가 만민공동회에 달려와서, 마포에 둔을 치고 있는 보부상의 행패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분격한 시민 수만 명은 보부상을 토파하기로 결의하고, 그 중 일부가 신문 밖으로 나가서 마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 때 시민들은 손에 목봉을 든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모두가 빈손이었다. 반면에 보부상들은 폭력배화한 데다 긴 몽둥이를 들고 군사 편제로 진을 진 채 만일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빈손으로서는 보부상들을 이길 수 없었다. 시민들과 보부상들 사이에 1회의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으나, 시민들은 주먹을 휘두르고 보부상들은 물푸레 몽둥이를 휘둘렀으므로, 결국 회민 金德九가 중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李仁榮 등 10여 인이 모두 큰 부상을 입고, 마침내 시민들이 패퇴하였다.86)

시민들의 일부가 비록 보부상의 폭력에 패하였으나, 서울 시내 전체가 보부상에 대한 규탄으로 들끓고 있었으며,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종로에서 대규모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학도들이 휴학하면서 계속 종로로 모여들고 있어 의기가 충천했으므로, 대세는 만민공동회의 완전한 승리로 예견되었다. 시민들은 보부상을 몰아내고 독립협회를 반드시 복설할 결의에 충만되어 있는 반면에, 보부상들은 시민들의 봉기에 극도로 위축되어 마포에 둔을 치고 움직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일부 고급장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지지했으므로 사태는 만민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였다. 심지어 경무청의 순검들까지도 독립협회·만민공동회(민회)를 지지하고 정부를 비판하여 사직하려는 움직임마저 벌어졌다.87) 이 때 황제 고종과 수구파들은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다.

이미 서울 시내는 혁명 전야와 같은 분위기에 들끓고 있었으므로, 지도자

⁸⁴⁾ The Independent, November 24, 1898, Molayo's Reports.

^{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9, 〈機密本省往1・2・3〉, 1899년 5월 17일, 機密 第36號 加藤公使在任中 事務經過大要 記述具申의 件 가운데 22번 負報商과의 衝突.

^{86) 《}駐韓英國領事館報告》(Reports and Communications from the British consul in Seoul), 1898년 11월 25일, 機密報告書 第112號.

^{87)《}皇城新聞》, 1898년 11월 23일, 雜報〈不拘小祿〉.

들이 나와서 이 시민들을 조직하고 선동하면 시민혁명이 폭발할 형편이었다.

황제와 수구파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만민공동회 탄압을 모색해 보다가 천하민심이 완전히 만민공동회로 돌아감을 보고 이날 오후부터 민의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하였다. 황제는 태도를 돌변하여 조병식·유기환·이기동·김정근 등을 재판에 부치도록 하고, 홍종우·길영수·朴有鎭 등을 유배시키도록 명령하였다.88) 또한 황제는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를 불러들여 만민의 해산을 요청했으나, 이미 윤치호로서도 도저히 만민을 해산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듣고, 11월 22일자로 마침내 독립협회의 복설을 승인하였다.89)

만민공동회는 17명의 독립협회 지도자가 구속되고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된 후 만 18일간의 불철주야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마침내 독립협회 복설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것은 만민공동회와 시민들이 쟁취한 또 하나의 큰 승리였다.

만민공동회 제19일째인 11월 23일에도 시민들은 아직도 분한을 다 풀지 못하여 다투어 밀려가서 조병식·민종묵·유기환·이기동·홍종우 등의 가 택을 수색하여 만민공동회를 모해한 서류들을 증거로 찾아내어 갖고 돌아 왔다.90)

황제는 시위대와 순검들이 궁궐을 잘 호위하지 않고 만민공동회를 지지하여 사직을 원하므로, 11월 22일 밤부터는 각국 공사·영사와 그 가족들을 궁궐로 불러서 황제를 호위토록 하였다. 각국 공사·영사들은 황제 고종을 하룻밤 호위해 주고 나오는 길로 11월 23일 각국 사신회의를 열어 논의해 보았으나 여전히 통일된 대책이나 견해는 나오지 않았다. 오직 일본공사대리는 병력을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무력 탄압하도록 황제에게 권고하자고 영국 공사와 미국공사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91)

정부는 이날 내부대신서리와 경무사를 만민공동회에 보내어, 독립협회 복설이 승인되었으니 만민공동회를 해산하라고 요청하였다. 만민공동회는 다음

⁸⁸⁾ 法部 編, 《起案》(奎 17277의 1·2) 제69책, 광무 2년 12월 22일, 照會 第81號.

⁸⁹⁾ 議政府 編. 《奏議》(奎17703) 제24책, 광무 2년 11월 22일, 奏本 第241號,

⁹⁰⁾ The Independent, November 24, 1898, Molayo's Reports.

^{9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機密本省往信〉, 1898년 12월 13일, 機密 第55號 使 臣會議에서의 日置代理公使의 質問一件에 關한 件.

과 같은 3개 조건을 내걸고, 그것이 수락되면 해산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① 조병식·민종묵·유기환·김정근·길영수·박유진·홍종우 등 8逆을 즉시 체포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
- ② 보부상들이 강변에 둔취하여 장정을 모집하고 鎗棒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서울을 바로 쳐들어가서 장안 백성들을 도륙하고 가옥을 불지르고 파괴하고자합이니, 즉각 퇴산시키어 宗社를 편안히 하고 생령을 보호할 것.
- ③ 정부 대관은 賢良을 택용하여 반드시 나라 사람들이 可하다고 말한 연후에 임명할 것(鄭 喬,《大韓季年史》上, 345~346쪽).

정부는 이에 대하여 3개 조항이 모두 정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92)

황제와 수구파정부는 만민공동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보부상 혁파를 명령하였다. 물론 비밀리에 궁중의 보호를 받는 보부상들은 이에 복종하지 않고계속 마포 일대에 둔취하고 있으면서 지방에 통문을 보내어 자기 세력을 서울로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보부상의 공식적 혁파는 일단 만민공동회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만민공동회는 보부상들이 정부의 해산명령에 불복하여 아직 퇴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를 일시 해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윤치호 등이 중심이 되어 해산문제를 5시간이나 논의하였다. 윤치호는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는 없으나, 만민공동회의 불해산이 보부상의 불해산의 구실이 되고 있으니, ① 황제의 해산 조칙을 전혀 불복하기는 어려운실정이고, ② 지금 단계에서 만민이 해산하지 않으면 각국인들의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며, ③ 정부에게 무력 탄압을 자행할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고, ④ 정부가 만민의 소원을 다 실시한다고 약속했으니 한 번만 더 속아보아 잘못된 점이 정부에 있음을 알게 함이 좋겠다고 제의하였다.

윤치호는 며칠동안 만민공동회가 해산하여 정부의 조치를 보아서, ① 보부 상도 퇴거시키고, ② 보부상들을 일으켜 전국을 망하게 하려고 음모하던 무리도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며, ③ 五凶도 법률에 따라 처단하고, ④ 정부 대관들도

⁹²⁾ 鄭 喬, 《大韓季年史》上, 346쪽.

현량을 택용하고, ⑤ 무죄한 시민들도 다시 탄압하지 않으면 다행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모여 만민공동회를 계속하자고 제의하였다.⁹³⁾

만민공동회는 이 제의를 채택하여 만민들이 사실상 승리했으니, ① 만민공 동회를 일시 해산하되, ②회원 중 300명을 선정하여 독립협회 사무소에 보 내서 11월 24일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대기하여 정부가 약속한 조항을 실 시하는가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만 민공동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하며, ③회원 중 200명을 별도로 선정해서 각 潛내의 각 방곡에 순행 사찰케 하여, 보부상들이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정 탐하기로 하고, ④ 11월 23일 오후 8시를 기해 2일간 만민공동회를 해산하기 로 결정하였다.94)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만 19일 동안 찬 겨울비가 뿌려도 하루도 쉬지않고 수구파들의 폭력에 대결하면서 철야시위를 감행한 독립협회·만민공동회는 일단 지도자 17명 석방과 독립협회 복설의 쟁취에 성공하고, 11월 23일 밤 12시를 기해 2일간의 조건으로 일시 해산하여 귀가하였다.95)

황제와 정부는 만민공동회 해산에 대응하여 대신들을 개편하였다. 황제는 만민공동회의 지지를 받는 박정양을 의정부 참정, 閔泳煥을 내부대신 겸 임시서리 군부대신 사무, 김명규를 임시서리 의정사무, 權在衡을 농상공부대신, 李根澔를 경무사로 임명했으며, 문제의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사직케 하고, 협판고영희를 서리 대신사무로 임명하였고, 한성판윤에는 윤치호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황제와 정부는 보부상의 해산에 대해서는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를 본 참정 박정양과 내부대신 민영환은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5) 황제 친유와 중추원 의관 임명

만민공동회는 11월 23일 밤 해산하여 정부가 약속한 3개조인 ① 8흉의 체 포와 재판, ② 보부상 혁파, ③ 대신의 인재 택용 등의 실행을 기다렸다. 그러

^{93) 《}독립신문》, 1898년 11월 25일, 잡보〈잠시파회〉.

⁹⁴⁾ The Independent, November 24, 1898, Molavo's Reports.

^{95) 《}독립신문》, 1898년 11월 25일, 잡보〈잠시파회〉.

나 그 시한인 11월 25일까지 정부측의 뚜렷한 실행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만민들은 11월 26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다시 종로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집결 하여 대규모의 만민공동회가 다시 개최되었다.

보부상들은 수구파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마포에 屯聚하고 있었고, 종로에서는 시민들의 대규모 만민공동회가 다시 개최되었으므로,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의 대치는 11월 23일 이전이나 다름없는 상태로되어 다시 협악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다.

황제는 사태가 다시 심각하게 됨을 보고 親諭에 나서서 사태를 황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습해 보려고 하였다.96) 황제는 만민공동회에 대하여 오후 1시에 200명의 대표를 선정해서 정동의 경운궁 문밖에서 대기하라고 칙령을 내렸다. 황제는 또한 황국협회에 대해서는 오후 3시에 역시 200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대기하도록 칙령을 내렸다. 이에 만민들은 만민공동회 장소를 종로로부터 정동으로 옮기어 질서정연하게 대회를 열고 대기하였다.97)

황제 고종은 수백 명의 시위대로 정동 일대를 엄중히 경비케 하고, 각부대신 및 외국 공사·영사와 그 부인들을 조치하여 좌우에 분립시켰으며, 시위대 군인들을 양편에 정렬시킨 다음, 오후 1시에 작은 가마를 타고 돈례문(경운궁 남문)의 군막에 친림하였다.98) 외국 공사·영사들은 일종의 증인이된 셈이었다.99) 황제가 직접 국민 대표들을 상면하러 대궐밖에 자리를 만든 것은 조선왕조 개창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자 내부대신서리가 황명을 받고 회중에 와서 만민공동 회측 대표를 불렀으므로, 200명의 대표가 그를 따라 인화문 밖 황제가 친림 한 탑전으로 들어가 황명을 기다리었다. 황제는 만민공동회 대표 200명에게

^{96) 《}駐韓英國領事館報告》(Reports and Communications from the British consul in Seoul), 1898년 11월 28일, 機密報告書 第114號.

^{97) 《}제국신문》, 1898년 11월 28일, 별보 및 잡보.

⁹⁸⁾ 鄭 喬,《大韓季年史》上, 351쪽.

^{99) 《}駐韓美國領事館報告》(Communications from the Secretary of State from U. S. Representatives in Korea: H. N. Allen), 문서번호 162, 1898년 11월 28일, Political Agitation in Korea.

만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겠다고 친히 하교하였다.100)

황제는 이와 함께 만민공동회에 농상공부대신 權在衡을 통하여 칙어를 전유하였다. 황제는 이 칙어에서 ① 군신 상하가 信과 義를 지키며, ② 현명하고 능력있는 이를 전국 안에서 구하고, ③ 아름다운 진언을 초야의 백성들에게서 캐어 쓰며, ④ 오늘 새벽까지의 일은 유죄・무죄와 경중을 헤아리지 않고 모두 씻어버리고, ⑤ 민회와 보부상의 양민이 모두 짐의 적자이므로 서로돕고 친해서 돌아가 각기 그 생업을 편안히 하라고 강조하였다.101)

이 칙어를 전달한 다음, 권재형은 이제는 회민이 퇴거하겠는가 아니하겠는 가 응답을 요구하였다. 만민공동회 회장 고영근은 자기 의견으로서 봉답하기 는 어려우므로 회원의 의견을 묻겠다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이를 허락했으므 로 만민공동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5개 조항을 결의하여 상주하였다.

- ① 독립협회를 복설할 것.
- ② 대신들을 잘 선택하여 임명할 것.
- ③ 소위 보부상은 이제 태생적 폐단이 적지 않으니, 비록 칙령으로 혁파했으나다시 명목을 바꾸어 앞서의 폐단을 답습할 염려가 있으므로 영구히 혁파할 것.
- ④ 법령의 규정을 실시하고 전일 헌의 6조와 조칙 5조를 반드시 실시할 것.
- ⑤ 조병식·유기환·이기동·김정근·민종묵·홍종우·길영수·박유진 등을 처벌할 것(鄭 喬,《大韓季年史》上, 352쪽).

황제는 권재형의 상주를 통하여 만민공동회의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듣고, 만민공동회 회원 중 3인을 다시 선출하여 직접 면대해서 상주하도록 명령하였다. 만민공동회는 고영근·윤치호·이상재 등을 총대위원으로 선출하여 다시 면대해서 상주하게 하였다. 고영근·윤치호·이상재 등은 ①5흉의재판, ②만민이 신임하는 대신의 임명, ③한의 6조의 실시를 주청하고 물러나왔다.102)

황제는 이에 법부대신 한규설을 통하여 칙유하기를, ①복설하는 독립협회는 국내의 문명 진보를 토론하는 데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용훼

^{100) 《}독립신문》, 1898년 11월 28일, 〈국태민안〉.

^{101) 《}皇城新聞》, 1898년 11월 28일, 別報.

¹⁰²⁾ The Independent, November 29, 1898, Molayo's Reports.

는 불허하며, ② 8신 중 5신은 법에 따라 유배하라는 조칙을 이미 내렸으니 그 부처에서 조만간 거행토록 하겠고, ③ 홍종우 등 3신은 商民의 두령이니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④ 보부상 혁파는 조칙을 이미 반포했거니와 농상공부로 하여금 다시 상의해서 민폐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요, ⑤ 헌의 6조는 차례로 실시하여 국민에게 신의를 보일 터이니, 국민들은 그리 알라고하였다.103)

만민공동회는 이에 대하여, ① 착유하신 가운데 3신은 폐하의 의사가 그러하시니 이것은 황제의 처분에 따르겠으며, ② 5신을 이제 법률과 장정을 실시하는 날을 당하여 재판하지 않고 유배하면, 그 죄를 어디에 근거하며 그형률을 어디에 따를 것인지 모르게 되니, 반드시 재판하여 법률에 따라 처형케 해달라고 응답하였다.

황제는 이에 탁지부대신을 통하여, 민원이 그렇다면 5신은 마땅히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황제가 사실상 만민공동회의 요구 조건을 모두 승낙한 것이므로, 만민공동회 회원들은 기쁨에 넘쳐 만세를 세 번부르고 물러 나와 해산하였다.104)

황제는 이날 오후 4시에 보부상 대표 200명을 불러서 역시 권재형을 통하여 칙어를 전포하였다. 이에 대해 보부상들은 홍종우·길영수·박유진 등을 총대위원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3개 조건을 청원하였다.

- ① 일찍이 商務所의 허가를 얻어서, 충성스러운 분노가 일어나 만민공동회와 쟁투를 야기했다가, 정부 대신들이 신 등의 진의를 오인하여 상무소를 혁파하였으니, 신 등의 충정을 불쌍히 살피시어 商理局과 각 지방의 任房을 복설하여 생업을 편안케 해 줄 것.
- ② 만민공동회는 그 이름은 다를지라도 독립협회와 일체이니 함께 혁파할 것
- ③ 조병식 등 8인은 무죄임을 밝히어 모두 석방할 것(鄭 喬, 《大韓季年史》上, 354쪽).

황제는 이에 대하여, ① 원래 상리국과 농상공부는 성격이 같은 것이니 결 코 허가할 수 없으나, 너희들의 생업은 편안케 하도록 농상공부로 하여금 절

^{103) 《}皇城新聞》, 1898년 11월 28일, 別報.

¹⁰⁴⁾ 鄭 喬,《大韓季年史》上, 353쪽.

충 조처하도록 할 것이며, ②독립협회의 성질은 그 전과 다름을 이미 최교로 내려 알렸고, ③ 8인은 마땅히 재판을 열어 그 죄의 유무에 따라 처분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고 물러가라고 하였다. 이에 보부상들은 정동 병문에 나와서 만세를 삼창하고 물러갔다.105)

이날 황제 고종의 친유에는 각국의 신사숙녀가 모두 예복을 입고 참관하여 이 광경을 보았으며, 각국 공사·영사들이 모두 정숙히 시위하고 서서 경의를 표하였다.106) 또한 시민들로서 이 광경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담을 쌓은 것과 같이 많았다. 이날의 황제 친유는 황제 고종의 입장에서는 크게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황제와 수구파정부는 만민공동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뜻으로 중추원 관제를 실시하기 위해 11월 29일 중추원 의관 50명을 선정 지명하였다.107)이 때 지명된 중추원 의관은 계파별로 보면,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계열이 17명, 황국협회 계열이 16명, 황제파 계열이 17명이었다. 즉 황제와 황국협회 등 수구파가 33석으로 3분의 2석을 차지하고,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개혁파가 17석으로 3분의 1석을 차지하도록 한 것이었다.

개혁파(독립협회·만민공동회)와 수구파(황제파·황국협회·도약소 등) 의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구파・왕당파(황제직계파・황국협회・도약소 계열): 李教奭・洪鍾宇・李觀濟・ 沈殷澤・李時宇・元世性・尹履炳・李秉膺・金炳駅・金奎弼・宋達顯・金永 祐・尹始永・鄭寅穆・李德夏・崔錫彰・金東植・朴永駱・尹奭榮・兪奭濬・ 李挨眞・姜相驥・柳渡秀・都鎭三・朴來秉・李秉召・金相範・李圭煥・李南 珪・洪鍾億・朴夏成・李琦・宋秀萬 이상 33명

(議政府 編, 《奏本存案》(奎 17704) 제3책, 광무 2년 11월 29일, 奏本 第252號).

^{105) 《}皇城新聞》, 1898년 11월 28일, 別報,

^{106)《}駐韓日本公使館記錄》8,〈機密本省往信〉, 1898년 12월 13일, 機密 第56號 韓帝 謁見 始末 및 敦化門 親臨의 件.

¹⁰⁷⁾ 議政府編、《奏議》(奎17703) 제24책, 광무 2년 11월 29일, 奏本 第252號 中樞院 議官會議薦選叙任事。

결국 황제와 수구파의 지지세력이 총 정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33석이었다. 황제와 수구파들은 자기의 지지세력으로 하여금 중추원의 3분의 2석을 차지하도록 배정하여 중추원을 황제와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개편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정부는 중추원 의관에게 월급을 30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개원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황제와 정부의 이러한 중추원 의관 임명에 만족하지 않았으나, 황제와 수구파를 앞으로 포섭해 나가기 위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김덕구 만민장 시위와 만민공동회의 재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황제 친유 직후의 시위운동 해산기간을 활용하여 독립협회·만민공동회와 시민들의 공고한 연대를 다지기 위해서, 지난 11월 21일 황국협회와 맨주먹으로 투쟁하다가 죽은 신기료장수(구두 수선공) 金德九의 장례를 12월 1일(음력 10월 8일) 萬民葬으로 성대하게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김덕구의 만민장을 결정한 것은 김덕구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개혁운동을 지지하여 순국했으므로 그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위에 ① 비록 신기료장수인 평민일지라도 애국과 충의를 위해 순국하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그를 '義士'로 추대하여 거국적으로 추모하며, ② 독립협회・만민공동회와 일반 시민이 단결했음을 과시함으로써 수구세력・황국협회세력을 위압하고, ③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여 신흥 애국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김덕구 만민장은 의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운동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진행된 것이었다.

만민공동회 회원들은 1898년 12월 1일 오전 9시에 일반 시민과 함께 수만 명이 모여 김덕구의 초빈처인 숭례문(남대문) 밖 10리허에 있는 西署 雙龍井으로 가서 비단옷으로 개렴하고 입관한 다음, 장례식 장소인 숭례문 밖 蓮池로 향하여 운구를 시작하였다.108)

김덕구 만민장은 쌍용정으로부터 연지까지의 운구에서부터 벌써 시위의

성격을 띠어갔다. 상여 앞에는 '大韓帝國義士 金公德九之柩'라고 대서한 명정을 높이 들고, 상여 뒤에는 김씨의 부인이 소교를 타고 뒤따랐으며, 다시 그 뒤로는 각 학교와 각 동리의 기호를 높이 세우고 시민들과 학도들이 뒤를 따랐다. 이미 이 시각부터 수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길을 메웠으며, 외국인들도 이 특이한 만민공동회 장례식을 보려고 거리로나왔다. 일개 평민의 장례식을 보려고 수도 서울 장안의 대규모 시민들이 이렇게 모인 장관은 동양 각국 만고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덕구의 운구가 장례식 처소인 숭례문 밖 연지에 당도하자, 천막을 높이 치고 그 밑에 영구를 안치한 다음 오후 1시부터 路祭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먼저 영어학교 학생들이 명문장으로 된 제문을 지어 읽었다.109)

다음에는 찬양회의 부인회원들이 또한 제물을 성대하게 준비하여 노제를 지내었다.110) 그 다음에는 私立與化學校 교사들이 제물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제문을 지어 노제를 지내었다.111) 그 다음에는 이화학당 여학생들이 찬미가를 불러서 많은 시민들을 감동케 하였다. 노제를 다 지내고 停柩所에서 떠나남단 앞 갈월리 山地로 향하는데, 상여 뒤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찬양회부인들이 동행하여 광채가 더욱 찬란하였다.112)

이날 도로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김덕구 만민장의 광경을 지켜보았다. 또한 남대문 밖 이문골에 사는 소년들이 子童義士會라는 어린이 단체를 조직하여 김덕구 만민장에 참석해서 애국연설을 하여 장례식에 모인 만민공동회 회원들과 시민들 수만 명을 감동케 하였다.

하관 시간이 당도하자 예정대로 안장하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회원들이 정성껏 성대하게 준비한 제물을 차려 평토제를 지내었다. 평토제의 축문은 만민공동회 회장 고영근이 독립협회·만민공동회·시민들을 대표하여 지어 읽었다.113)

¹⁰⁸⁾ 鄭 喬,《大韓季年史》上, 362쪽.

^{109) 《}독립신문》, 1898년 12월 3일, 잡보 〈로제축문〉,

^{110) 《}제국신문》, 1898년 12월 3일, 잡보,

¹¹¹⁾ 鄭 喬,《大韓季年史》上, 362~363\.

¹¹²⁾ The Independent, December 3, 1898. A Remarkable Funeral.

^{113) 《}獨立新聞》, 1898년 12월 5일, 잡보〈평토제 축문〉.

고영근이 축문을 읽을 때 여기에 참석한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만민들은 김씨의 묘 앞에다 '大韓帝國義士 金公德九之碑'라고 새긴 묘비를 세우고, 사무위원 5인을 선정하여 山役을 마치도록 위임한 후 돌아왔다.114)

만민공동회의 김덕구 만민장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김덕구 만민장에 참가한 시민들은 애국심이 고양되고 단결·연대의식이 강화되어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회원들이 되었다. 김덕구 만민장을 참관·구경한 시민들은 이 장엄한 장례식을 보고 애국심이 고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지지세력이 되었다.

또한 김덕구 만민장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공격하며 행패를 부리던 황국협회의 일부 회원들까지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민회(독립협회·만민 공동회)의 편에 서게 만들었다. 《독립신문》도 김덕구 만민장의 이러한 영향을 사례를 들면서 보도하였다.115)

실제로 김덕구 만민장 거행 후 황국협회 일반 회원들이 이를 보고 동요하여, 황국협회 임시회장 길영수와 황국협회 회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났으며, 황국협회 출신 중추원 의관들이 사임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116)

독립협회는 김덕구 만민장의 성공 여세를 활용하여 황국협회를 무력화시키고 보부상들을 포섭하여 독립협회에 동조시키려고 하였다.

전국 각지방으로부터는 김덕구 만민장의 소식을 듣고 독립협회와 만민공 동회에 대한 성원과 의연금이 쇄도하여,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회원들의 사 기를 더욱 고양시켰다.

그러나 수구파들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상승하는 기세를 누르고 수구 파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암약하였다.

황제와 수구파들은 의정부 참정 박정양, 외부대신 민영환, 법부대신 한규설, 농상공부대신 권재형 등 개혁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신들을 12월 2일자로 해임하였다. 황제는 행정부를 재조직하면서 민영환을 참정으로, 박정양을 농

^{114) 《}독립신문》, 1898년 12월 2일, 잡보〈의사장례〉.

^{115) 《}독립신문》, 1898년 12월 6일, 잡보〈의리있는 부상〉.

^{116) 《}독립신문》, 1898년 12월 6일, 잡보〈의관사직〉.

상공부대신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수구파 대신으로서 군부대신에 심상훈, 탁지부대신에 민영기, 외부대신에 박제순, 학부대신에 김명규, 내부대신 서리에 李允用 등을 진출시켰다.117)

황제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대한 친유 약속은 실행되지 않고, 도리어 수구파가 역습의 기회를 노리어 암약하고 있음이 뚜렷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11월 26일의 황제 친유 이후 10일간의 기다림을 보니 황제가 약속한 국정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보부상패들도 완전히 해산시키지 않았으며, 도리어 황제와 수구파가 내밀히 결합하여 만민공동회가 규탄해오던 민영기·심상훈·김명규·박제순·이윤용 등을 재중용한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하게 되었다.

만민공동회는 이것이 황제와 수구파의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1898년 12월 6일 오후에 다시 종로에 모여 급진파의 주도하에 만민공 동회를 재개하였다.¹¹⁸⁾

황제 친유로 인하여 11월 26일 일단 해산했다가, 만 10일후인 12월 6일 만민공동회가 재개되어 다시 직접 국정개혁운동을 계속하게 된 것이었다.

7) 국정개혁 요구와 중추원 의관의 인재 투표 선출

만민공동회를 12월 6일 종로에서 재개한 시민들은 고영근을 소두로 하여 긴급히 국정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었다. 그들은 이 상소에서 ① 헌의 6조의 실시, ② 5흉의 재판과 처벌, ③ 보부상 혁파의 즉각 실행을 요구하였다.¹¹⁹⁾

만민들은 계속 2차 상소와 3차 상소를 올리면서 황제가 친히 약속한 국정 개혁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였다. 시민들이 만민공동회를 재개하여 다시 계속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자, 조병식·민영기 등 수구파들은 독립협회가 기어이 共和政治를 실현하려 한다고 모략하였다. 황제는 이 모함을 믿고 길영수·홍종우 등에게 비밀히 명령을 내려 보부상들을 다시 소집케 했으며, 또한 민영

^{117)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0월 21일, 詔.

¹¹⁸⁾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8년 12월 27일.

^{119)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0월 23일, 從二品高永根等疏.

기에는 탁지부의 은으로 보부상들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황제는 시위대 대대장에게 명하여 경운궁 전후 좌우의 길과 방곡을 더 엄중히 경비 하도록 궁궐 호위를 강화하였다.¹²⁰⁾

12월 9일과, 10일에는 기독교도들도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합세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알렌(H. N. Allen)과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에게 압력을 넣어 기독교도들을 철수시켰다.121) 알렌도 자기가 기독교들의 소요를 저지시켰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122) 그러나 만민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국정 개혁의 실시를 요구하며 연일 연야 완강한 철야시위를 전개하였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12월 11일에는 관민공동회 때의 헌의 6조와 조칙 5조를 인쇄하여 이튿날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반포하였다. 이것은 황제와 정부에 대하여 그 때 이후 관·민간에 합의한 국정개혁의 실시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는 압력을 넣고 그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민공동회는 또한 12월 12일부터는 대회장소를 종로로부터 광화문의 六曹 앞 각부 문전으로 옮기어 정부에 더욱 직접적인 압력을 넣기 시작하였다.1²³⁾

시위대 제2대대장 金明濟는 만약 만민들이 정동 근처에 이르면 처음에는 총개머리판으로 쳐서 이를 저지하다가, 물러가지 아니하면 사살해도 좋다고 발포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병정들은 백성과 나라의 일을 성심껏 추진하는 만민들에게는 죄가 없으므로 차라리 병정을 그만두고 만민과 함께 의로움을 지켜 죽을지언정 만민을 총살할 수는 없다고 불복하였다.124) 만민 공동회는 김명제의 병정들에 내린 명령을 듣고, 우리는 마땅히 죽을 땅에서 죽겠다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응하면서 그들의 결의를 다짐하였다.125)

¹²⁰⁾ 鄭 喬,《大韓季年史》上, 368\.

¹²¹⁾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舊韓國外交文書》11(高麗大 出版部, 1967~1973), 《美案》12, 문서번호 1875, 1898년 12월 12일, 負商投書에 따른 基督敎人의 抗 議에 關한 解明.

^{122) 《}駐韓美國公使館報告》(Communica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U. S. Representatives in Korea: H. N. Allen), 문서번호 167, 1898년 12월 23일, On the Part Taken by Native Christians in Recent Political Agitation in Seoul.

^{123)《}皇城新聞》, 1898년 12월 13일, 雜報〈共請部官〉.

^{124) 《}독립신문》, 1898년 12월 15일, 잡보〈병정의리〉.

¹²⁵⁾ 鄭 喬、《大韓季年史》上、378쪽.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운동이 서울에서 완강하게 지속되면서 점차 가열해 짐에 맞추어 지방으로부터의 지원도 더욱 증가되었다. 각 지방에서는 독립협회에 청원하여 독립협회 지회의 설립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독립협회는 우선 12월 12일경 충청북도 沃川지회의 설립을 인가해 주는 한편, 12월 13일에는 각 군지회 설립 신청자들에게 답장을 냄과 동시에, 지회인가 조례(7개조)와 지회세칙(7개조)을 鄭 喬 등 규칙개정 겸 제소위원들로 하여금 제정해서 각 지방에 발송하였다.126)

전국 각지에서 만민공동회 재개를 지지하는 격려문과 의연금이 계속 답지했으므로, 만민들은 더욱 사기가 앙양되어 수구파 대신들의 해임과 국정개혁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면서 연일 연야 철야시위를 계속하였다.

만민공동회는 12월 14일 광화문 앞에서 만민들을 폭행하여 충돌을 일으키려고 목봉을 감추어 침투한 보부상 간부 4명을 적발하여 침투 목적을 추궁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① 윤치호·고영근·이상재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② 서울시내 주요 보부상 도소 3곳에 보부상 및 몽둥이꾼 수백 명을 매복시켰다는 것, ③ 보부상의 경비 19만 냥이 황제의 내탕금에서 공급되었다는 것, ④ 만민공동회를 공격하기 위해 白民會가 조직되었는데 그 자금 2,000원을 탁지부 대신 민영기가 조달했다는 것 등을 자백하였다.127)

황제는 만민공동회가 해산하기는 커녕 날로 그 지지세력이 증대될 뿐 아니라 자기의 보부상 재정지원까지 공격대상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무마책으로서 12월 15일밤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를 한성판윤, 金永準을 경무사로 임명하였다.128)

만민공동회는 12월 16일 광화문 앞에서 적발한 보부상 간부 4명을 경무관에게 인도하여 그들의 음모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29)

만민공동회는 재개 12일째인 12월 17일에도 경무청 문 앞에서 대회를 개 최하였다. 이날 만민공동회는 광화문 앞에서 적발하여 경무청에 인계한 4명의

^{126) 《}독립신문》, 1898년 12월 15일, 잡보〈본회답장〉.

¹²⁷⁾ The Independent, December 20, 1898, Molavo's Reports.

^{128)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1월 초3일, 詔.

¹²⁹⁾ 法部 編, 《起案》(奎 17277의 1·2) 제70책, 광무 2년 12월 17일, 訓令高等裁判所第149號.

보부상 간부들이 자백한 사실을 중심으로 황제께 상소를 올리었다. 그들은 이 상소에서 ① 보부상을 혁파했다고 하지만 皇國商務協會라고 개명하여 황제의 분부를 받아 행동하고 있고, ② 보부상들의 경비는 황제의 하사금과 탁지부의 지출이라 하며, ③ 암살의 순서는 고영근·윤치호·이상재의 순이라하고, ④ 白民會는 만민공동회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경비는 군부대신민병석과 권동수가 탁지부에서 입안하여 탁지부대신 민영기가 지출했다 하니 조사해서 재판에 붙일 것이며, ⑤ 민영기·심상훈·김명규 등 3대신의 해임, 조병식·민종묵·김정근 등 3대신의 장계, 유기환·이기동 2흉의 재판및 보부상들의 엄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130) 또한 이날 만민공동회는 총대위원 이건호·이승만을 경무사 김영준에게 파견하여 김영준의 사직을 권고하였다.(131)

이 때 황제는 만민공동회의운동을 해산시키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중추원을 열어 여기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의 요구 조건을 다루게 하고, 만민공 동회는 해산케 할 것을 구상하였다.

황제는 12월 14일 정부에 대하여 중추원 개원 준비를 명했다. 132) 중추원 의장 李鍾健은 중추원 의관들을 소집하여 12월 15일 오후 4시에 개원해서 부의장을 선출한 결과 윤치호가 선출되었다. 133)

정부자문기관으로 복구된 중추원이 12월 16일 오전 11시에 다시 개원되자, 독립협회 출신 의관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의관들은 현의 6조와 조칙 5조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출신 의관 崔廷德은 만민이 각부 문 앞에 서 연일 만민공동회를 열고 있는데 중추원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백성들이 귀가하여 생업을 편안히 해서 살게 할 방책의 하 나로 정부 대신에 임명할 만한 인재로서 물망있고 법률과 규칙을 어김없이 꼭 실시할 사람을 11명 선발하여 정부에 천거해서 정부로 하여금 황제에게 주품하여 쓰도록 하자고 동의하였다.134)

^{130)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1월 12일, 從二品高永根等疏.

¹³¹⁾ 鄭 喬.《大韓季年史》上. 387쪽.

^{132)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1월 1일, 詔.

¹³³⁾ 議政府 編、《奏議》(奎 17703) 제24책, 광무 2년 12월 22일, 奏本 第258號 圏點 多居人尹致昊依薦任命事.

이 동의가 재청을 얻어 의제로 채택되어 정부 대신급에 임명할 11명의 材器可堪者(재주와 그릇이 대신직책을 담당할 수 있는 자)를 공천하기로 의결되었다. 중추원 의관들의 투표에 의하여 다음의 11명이 재기가담자로 뽑혀 천거되었다.

 閔泳駿……18丑
 閔泳煥……15丑
 李重夏……15丑
 朴定陽……14丑

 韓圭卨……13丑
 尹致昊……12丑
 金宗漢……11丑
 朴泳孝……10丑

徐載弼……10茁 崔益鉉……10茁 尹用求…… 8茁

(The Independent, December 20, 1898, The Privy Council)

이 중에서 개혁파로는 민영환·이중하·박정양·한규설·윤치호·김종한· 박영효·서재필 등 8명이 투표로 천거된 것이었고, 수구파로는 민영준·최익 현·윤용구 등 3명이 천거된 것이었다.

11명의 재기가담자 중에 수구파가 3명이나 천거된 것은 수구파 의관들의 추천에 독립협회 출신 의관들도 이 3인에 대해서는 애국적 수구파로 동조해주었기 때문이었다. 민영준은 약간 친청적 경향은 있었으나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최익현과 윤용구는 일본의 침략에 극히 비판적인 인물로서, 모두 자주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독립협회와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논란이 일어났던 것은 박영효와 서재필의 경우였다. 박영효는 대역죄인의 죄명을 쓰고 일본에 망명 중이었고, 서재필은 국적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었다. 정항모 등 일부 독립협회 출신 의관들은 박영효와 서재필의 천거를 명단에서 제외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홍정후가 이를 재청하여 표결에붙여졌다. 135) 그러나 이미 의결된 것이니, 박영효는 공개재판으로 죄의 유무판정을 거치도록 하고, 서재필은 국적의 재입적을 거치도록 하여 공천하기로원안이 확정되었다. 136)

¹³⁴⁾ 議政府 編,《中樞院來文》(奎 17789) 제3책, 광무 2년 12월 23일, 照覆 第1號.

¹³⁵⁾ 議政府 編,《中樞院來文》(奎 17789) 제3책, 광무 2년 12월 26일, 照覆 第2號 鄭 恒謨現告書 및 洪正厚現告書.

¹³⁶⁾ 議政府 編, 《中樞院來文》(奎 17789) 제3책, 광무 2년 12월 26일, 照覆 第2號 魚瑢

독립협회가 중추원에서 재기가담자 11명을 공천한 것은 실제로는 이 11명을 대신들로 한 개혁정부 수립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공천자 수를 11명으로 한 것은 당시의 정부 조직상의 대신급 직위의 수에 맞춘 것이었다. 137) 그리고 당시의 인물들을 고찰해 보면 중추원이 천거한 이 11명이 당시 생존했던 고급관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애국적이고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이 11명으로 강력하고 개혁적인 신정부를 수립하고, 중추원을 장차 의회로 개편해 나가면서, 사실상 전제군주체제를 입헌대의 군주체제의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감과 동시에 내정개혁을 단행하여 대한제국의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려고 한 것이었다.

만일 황제 고종이 중추원에서 공천한 11명으로 신정부를 수립해서 개혁정책을 실시한다면 만민공동회는 자발적으로 해산될 뿐 아니라,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세력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대개혁이 추진될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추원의 11명 대신후보자 천거는 황제 고종에게중요한 결단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독립협회 출신 중추원 의관들은 11명 재기가담자 투표선출 결과를 만민공 동회에 공포하고 그 사후 인준을 구하였다. 이에 만민공동회는 일본에 망명 해 있는 박영효를 소환하여 법부에서 그 죄의 유무를 재판해서 죄가 있으면 다스리고 죄가 없으면 정계를 면하여 서용하자고 결의하였다.[38]

중추원의 11명 재기가담자 공천 결의안은 곧 정부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11명중에 황제가 기피하는 인물이며 대역죄인의 죄명을 지고 있는 박영효가 들어있는 것이 트집을 잡히게 되었다.

중추원에서 재기가담자 11명을 천거하고 있는 동안에도 만민공동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만민공동회 재개 13일째인 12월 18일은 일요일인데다가 그 동안 만민공동회가 광화문 육조 앞에서 개최되어 행정사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

善現告書.

¹³⁷⁾ 議政府 編, 《奏議》(奎 17703) 제2책, 광무 2년 12월 9일, 議政府會議錄.

^{138) 《}皇城新聞》, 1898년 12월 20일, 雜報〈請餘裁判〉.

고, 또 관리들이 사무를 게을리 하면서 허물을 만민공동회에 돌릴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날부터는 만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였다.139)

황제 고종은 그간의 만민공동회의 자주 민권 자강운동과 중추원의 재기가담자 11인의 천거에 의한 개혁정부 수립 요구에 부딪혀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었다. 특히 중추원 천거의 11명 속에 일본에 망명해 있는 박영효가 들어 있는 사실은 황제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內部 주사 李錫烈 등 33인이 연명 상소하여 박영효의 소환과 서용을 주장하였다. [40] 이 때 또한 독립협회내의 소장급진파들인 이건호·玄公康·宋寧洙·崔廷德·魚瑢善·이승만 등이 중심이 되어 박영효의 귀국운 동을 맹렬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41]

황제 고종은 이 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개혁정책에 반대한 것이 만민공동회운동을 불러온 것이라 생각하여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장차 박영효를 소환하여 우선 만민공동회를 진무하고 시정개혁을 도모할 뜻이 있었다. [42] 즉 황제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정부 수립과 개혁정책의 실시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민영기 등이 황제를 오도하여 군대로써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킬 것을 권고하고 주장하였다. [43] 황제는 우선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愼鏞廈〉

^{139) 《}皇城新聞》, 1898년 12월 19일, 雜報〈開會鍾街〉.

^{140)《}駐韓日本公使館記錄》8,〈本省往來信〉, 1898년 12월 27일, 發第88號 朴泳孝召喚의 建議에 關幹 件.

¹⁴¹⁾ 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2월 27일.

¹⁴²⁾ 鄭 喬,《大韓季年史》上, 392\.

¹⁴³⁾ 鄭 喬、《大韓季年史》上、392~393쪽.

2. 수구파 및 외세의 독립협회세력 탄압

1) 수구파 및 외세의 독립협회 · 만민공동회 탄압

황제 고종은 수구파의 진언에 따라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해산·탄압할 경우,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를 알아보기 위해 영국·독일·러시아·미국의 공사와 영사들을 불러 의견을 타진하였다.

이때 외국의 공사·영사들은 순검(경찰)을 사용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도록 권고하였다. 황제가 순검의 힘이 약하니 군대로써 만민공동회를 해산시시킴이 어떠한가를 물었을 때, 그들은 "이것은 外臣들이 알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찬의를 나타내지 않았다.1)

이때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가 12월 13일(1898) 일본으로부터 본국의 훈령을 갖고 귀임하여 15일과 18일에 陸見을 하게 되었다. 수구파와 궁중은 비밀리에 20만 원의 뇌물을 하사하고, 폐견 때에 "군대로민회를 해산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가토는 "외신의 나라에서도 유신의 초기에 군대의 용맹(兵勇)으로써 민회를 제압한 일이 있다"2)고 응답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킬 것"을 권고하였다.3)일본공사 가토는 무려 3시간의 폐견을 하면서 민회가 처음에는 충군애국에서출발했지만 이제는 난민의 부류에 빠져있다고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규탄하였다.4)

일본공사 가토가 노린 것은 독립협회의 해체였다. 일본측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 지배에 대항할 한국내의 저항세력이 궁극적으로 독립협회세력

¹⁾ 鄭 喬,《大韓季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57), 390\.

²⁾ 위와 같음.

^{3)《}駐韓日本公使館記錄》8(國史編纂委員會, 1989)、〈機密本省往信〉, 1898년 12 월 20일, 機密 第54號 事變에 關한 第一次 謁見의 件 및 別紙 一八九八年 十 一月 十日 右件 謁見 始末.

^{4)《}駐韓日本公使館記錄》9,〈機密本省往〉, 1899년 2월 27일, 機密 第5號 加藤公 使 歸任後의 政況 및 民會 解散의 件.

이라고 보고,5 11월 5일의 독립협회 해산과 17명 독립협회 지도자 구속 때에도 배후에서 이를 지원하고 조종했으며,6 이번에도 이 기회에 독립협회세력을 붕괴시킬 공작을 전개한 것이었다.

일본측은 한편으로 이미 12월 12일부터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를 방문하여 독립협회측에서 박영효를 소환하여 서용할 것을 권고했다가 윤치호에 의해 거절되자,7) 이번에는 일본유학생 출신인 독립협회 소장 신진파들에게 박영효의 소환과 서용을 권고하여 박영효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8)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공사 가토는 박영효의 소환 요구에 분격하고 있는 고종에게 군대 동원에 의한 만민공동회 해산과 독립협회 탄압을 적극 권고한 것이었다.9)

고종은 일본공사 가토의 진언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¹⁰⁾ 황제는 이미 군대 사용에 대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¹¹⁾ 일본측의 이 같은 진언을 받고 군대 사용을 확실하게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만민공동회는 12월 18일에도 수구파 관료들의 추방과 '재기가담자'에 의한 개혁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대회를 계속하였다. 황제는 閔泳綺를 평안남도 관찰사로, 경무사 金永準을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독립협회의 규탄을 받고 있는 수구파 대신들을 지방을 내보내는 한편, 신임 경무사에는 贊政 尹雄 烈을 겸임시켰다. 황제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의구심을 풀기 위하여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의 부친 윤웅렬을 특히 경무사에 임명했으나, 모두 형식에 불과하였고, 만민공동회 회원들도 역시 이를 믿지 아니 하였다.12)

^{5) 《}駐韓日本公使館記錄》9、〈機密本省往1・2・3〉、1899년 5월 17일、機密 第36號 加藤公使在任中 事務經過大要 記述具申의 件 가운데 21번 獨立協會의 運動.

⁶⁾ 尹致昊、《尹致昊日記》 5(國史編纂委員會, 1975), 1898년 11월 5・12일.

⁷⁾ 尹致昊, 《尹致昊日記》 5, 1898년 12월 27일.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本省往來信〉, 1898년 12월 27일, 發第88號 朴泳孝 召 還의 建議에 關砂 件.

^{9)《}駐韓日本公使館記錄》7,〈加藤公使時代極秘書類〉, 1897년 日字不明, 朴泳孝 逮捕 問題에 關한 件.

¹⁰⁾ 鄭 喬、《大韓季年史》上、390쪽、

^{11) 《}駐韓英國領事館報告》(Reports and Communications from the British Consul in Seoul), 1898년 12월 22일, 機密報告書 第123號.

^{12)《}駐韓日本公使館記錄》8.〈本省往來信〉, 1898년 12월 28일, 發第89號 閣員 交

만민공동회 재개 14일째인 12월 19일, 종로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는 총대위원 12인을 정부에 보내어 閔丙奭의 군부대신 임명과 金明奎의 찬정 임명의 이유를 질문했으며, 총대위원을 內部에 보내어 서면으로 민영기와 김영준의 관찰사 임명을 상주하여 해임해 주도록 요구하였다.13)

황제는 이날 오후 3시에 漢城 소윤과 경무사를 만민공동회에 보내어, 만민 공동회가 해산하지 않으면 매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므로 후회하는 일이 없 도록 하라고 경고적인 칙어를 내리었다.

만민공동회는 이에 대하여, ① 우리들이 누차 상소한 조목을 아직도 실시하지 아니한 고로 감히 물러가지 못하며, ②臣 등이 탄핵한 3대신이 비록대신의 직책에서는 해임되었으나 沈相薰은 특진관이요 김명규는 찬정이며민영기는 관찰사의 직임을 맡기니 이것은 옛 것을 갖고 壅蔽하는 것이어서민심이 복종하기 어렵고, ③ 보부상배는 비록 혁파했다고는 하나 동에 번쩍서에 번쩍 암약하는 흔적이 역력하니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뽑고 그 폐단을제거하지 않으면 백성의 정서가 더욱 의구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유언비어를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며, ④ 일전에 소명을 받고 감히 대령하지 못한 것은간세배들의 살해 음모가 있다는 설이 낭자한 고로 두렵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가득차서 대령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14)

만민공동회 재개 15일째인 12월 20일에도 시민들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계속하였다. 이날 이승만은 會衆에게 보부상의 주모자는 민영기이니 누구든지 그를 체포하면 은 1,000원을 지급하기로 현상금을 걸자고 동의하였다. 이 동의가 채택되어 민영기에게는 만민공동회로부터 1,000원의 상금이 걸렸다. 15) 또한 朴勝穆을 총대위원으로 선정해서 고등재판소에 보내어, 보부상들의 심문과정에서 밝혀진 보부상 배후 조종자인 전 탁지부대신 민영기와 군부대신 민병석 등 4인을 체포하여 공개재판에 부칠 것을 요구하였다. 16)

만민공동회 재개 16일째인 12월 21일에도 시민들은 고등재판소 문 앞에서

抶의 件.

^{13) 《}독립신문》, 1898년 12월 20일, 잡보,

^{14)《}皇城新聞》, 1898년 12월 20일, 雜報〈奉答勅語〉.

¹⁵⁾ 鄭 喬,《大韓季年史》上, 396~397\.

¹⁶⁾ 法務 編, 《司法稟報(乙)》(奎 17279) 제13책, 광무 2년 12월 21일, 報告書 第88號,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민영기 등의 체포와 재판을 계속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이날 만민공동회에는 子童義士會도 합세하여 이를 지원하였다.17) 그리고 시민들은 각부 관료들이 만민공동회를 빙자하여 사무를 게을리 할 것을 염

려해서 만민공동회 장소를 고등재판소 문 앞으로부터 종로로 다시 돌아와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18)

만민공동회는 이와 같이 자체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황제와 수구파정부는 군대 동원을 내면으로 결정한 후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다. 이날 황제는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① 죄인 박영효를 임용하라고 상소한 소두 李錫烈 등 범죄자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② 근래 기강이 해이해져서 국사범들이 문득 망명하는 것을 능사로 삼고 국체가 훼손되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니, 국외로 도망한 자는 본죄의 경중과 주범·종범을 불문하고 난신적자가 되기는 한 가지이므로 영원히 사면은 없을 것이며, ③ 만일 상소를 적탁하고 관청 사무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엄금하라고 하였다.19) 이것은 황제가 '박영효 천거'를 범법행위로 보고 응징할 뜻을 나타낸 불길한 것이었다.

만민공동회 17일째인 12월 22일 마침내 황제와 수구파정부는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황제는 정동의 대궐 근처 4곳에 대포를 수레에 실어벌여 놓아 시민들을 공포분위기 속에 몰아넣고 위압케 하였다.20) 또한 각부와 고등재판소 문 앞에는 군인들을 다수 배치하여 시민의 접근을 엄금하고 삼엄하게 경비토록 하였다.21)

만민공동회는 이날 종로에서 대회를 열었으나 만민공동회에서 '박영효 소환 임용'에 찬성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의 지지가 크게 약화되었으므로, 이날 모인 만민의 숫자는 이전과 같이 많지 않았다.²²⁾ 이날도 일부 회원들은 민영기·민병석의 재판을 청원하기 위해 고등재판소 문 앞으로 몰려갔다. 그들이 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군인들의 저지로 부상자가 3명이나 발생하

^{17) 《}독립신문》, 1898년 12월 22일, 잡보〈아동의리〉.

^{18) 《}독립신문》, 1898년 12월 22일, 잡보〈옳은 의론〉,

^{19) 《}東亞日報》, 1930년 1월 13일, 〈韓末政客의 回顧談-獨立協會長 尹致昊氏-〉 3.

^{20) 《}독립신문》, 1898년 12월 24일, 잡보〈인심안녕〉.

^{21) 《}독립신문》, 1898년 12월 23일, 잡보〈각부계엄〉.

²²⁾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8년 12월 27일.

였다. 崔廷德 등이 마침내 재판소 정원 앞에 뛰어 들어가 만민공동회의 청원 들을 속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³⁾

한편 종로의 만민공동회는 개혁정부 수립을 요청하면서 전임 만민공동회에 도발행위를 한 보부상들을 잡아 경무청에 넘겼다. 그러나 수구파의 보부상들에 대한 배후 지원이 증가했으므로, 유배 죄인 兪箕煥・李基東 등은 유배지로 가지 않고 인천에 숨어 머물다가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서울에 잠입해서 보부상들을 지휘하며 비밀리에 기회를 노렸다.²⁴⁾

또한 보부상 단체의 별칭인 白民會는 만민공동회에서 장정을 모집한다고 사칭하고 1인당 100당씩으로 100명의 장정을 모집했다가, 이것이 백민회에서 모집한 것임이 탄로되어 장정들이 분개해서 돌아가는 일도 발생하였다.²⁵⁾ 이 러한 상황과 분위기속에서 황제와 수구파의 군대 동원에 의한 만민공동회· 독립협회의 탄압·강제 해산의 날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2) 독립협회 · 만민공동회의 강제 해산

만민공동회 재개 18일째인 12월 23일 드디어 군대 동원에 의한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무력 탄압의 날이 왔다. 만민들은 이날 민영기의 재판을 청원하기 위해 오후 1시에 고등재판소 문 앞에 모였으나 시위대 제2대대 군인들이 一字 모양으로 총을 잡고 만민들을 포위하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영효의 소환 기용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26) 이미 군대 동원의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서 시위대와의 충돌을 꺼린 사람들도 많았으므로,이날 모인 만민들은 그 이전처럼 많지 않았다.

이날 시위대 제2대대 대대장 金明濟는 부하 병정들에게 각 3원씩 분급해 주고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만민공동회 해산에 동원하였다.²⁷⁾ 술취한 병정 2 명이 만민공동회 會衆에 돌입해서 임시회장 尹始炳을 부르면서 나는 일개

²³⁾ 鄭 喬,《大韓季年史》上, 399~400\.

²⁴⁾ 鄭 喬.《大韓季年史》上, 400쪽.

^{25)《}皇城新聞》, 1898년 12월 24일, 雜報〈忠不可欺〉.

²⁶⁾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8년 12월 27일.

²⁷⁾ 위와 같음.

병졸이라도 민회의 목적을 안다고 연설하려 하자, 만민공동회·독립협회 회원인 전 육군정위 林炳吉이 나서서 그 풍색의 아름답지 못함을 보고 "군인복장을 하고 민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章程에 없는 바다"라고 외치니, 그 병정과 함께 시위대 병정들이 일제히 회민을 포위하고 총검으로 위협하면서들어왔다. 시위대가 마침내 무력 탄압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다.28)

시위대의 작전이 개시되자 만민공동회 회민들은 위험을 느껴 일제히 기립해서 종로로 회중을 옮기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시위대 군인들이 종로로향하는 만민공동회 회민들의 후미를 포위하여 공격했으므로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다. 시위대 군인들은 발포 준비를 완료한 채 계속 만민들을 총검으로위협하며 추격하였고, 그 뒤에는 보부상들이 뒤따라오면서 "민회를 밟아라" "회원 연설자를 잡아라" "쳐라" "쫓아라" 등 고함소리를 내어 그 위협 기세가 살벌하였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만민공동회 회민들은 시위대 군인들의 총검과 보부상들의 몽둥이에 쫓기면서 종로를 향하여 밀려오다가, 비무장의 소수 만민들로는 날이 이미 어두워진 어둠속에서 시위대 군인들의 총검과 보부상들의 몽둥이에 희생이 너무 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철야시위를 하지 않기로 하여 분함을 억누르면서 일단 모두 해산하여 귀가하였다.²⁹⁾

황제는 12월 24일 서울 시내를 완전히 군대의 계엄상태하에 두었다. 시위대의 주력은 종로를 엄밀하게 파수 경계케 했으며, 서울 시내 요소요소에는 총검을 든 군인들이 배치되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러 나오는 것 같은 시민이 모이면 즉각 총검으로 위협하고 힐난하면서 귀가시켜 버렸다. 이에 시민들은 도저히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아침부터경무청과 군대에 의한 독립협회·만민공동회 간부들에 대한 체포 구금이 시작되었으므로, 회원 중 저명한 사람은 모두 도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수구파정부는 이에 발 맞추어 박영효를 천거하고 '可'표를 던진 중추원 의관을 색출하려고 중추원에 대하여 11인의 '재기가담자' 천거의 통첩을 반송함과 동시에 12월 16일 재기가담자 천거 때 최초의 동의자가 누구이며,

^{28) 《}皇城新聞》, 1898년 12월 26일, 別報〈民會續登〉.

²⁹⁾ The Independent, December 27, 1898, Molayo's Reports.

박영효 천거 때 '가'표·'부'표를 던진 의관들이 누구인지 구분하여 성명을 기재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³⁰⁾ 중추원은 이에 대해 12월 16일 재기가담 자를 투표 천거하자는 동의자는 최정덕이며, '가'·'부' 투표자 구별은 어렵다고 회답하였다.³¹⁾

황제는 이에 12월 23일자로 당일 동의한 의관 최정덕과 정부에 통첩한 의장대리 윤시병을 免本官하고, 당일의 임시의장 李時雨를 1개월 감봉 처분했으며, 중추원 의장 李鍾健을 궁내부 특진관으로 전직시켰다.

1898년 12월 25일, 마침내 공식적인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불법단체화와 강제 해산의 날이 왔다. 황제는 계엄상태하에서 칙어로써 만민공동회의 11개 죄목을 다음과 같이 들고, 만민공동회·독립협회를 불법화하여 강제 해산케 하였다.³²⁾

- ① 離次開會은 이미 금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취회하여 만연히 그칠 줄을 모르니 그 죄가 하나요,
- ② 독립협회를 이미 준허함이 있는데 '만민공동'이라 하여 천단히 명목을 세웠으니 그 죄가 둘이요.
- ③ 칙어와 비지로써 퇴거하라고 유시했거늘 오로지 항명하여 갈수록 더욱 심하 니 그 죄가 셋이요.
- ④ 쥐 잡으려고 그릇 깨는 것은 고인의 경계한 바이거늘 대관을 능욕함을 다반 사와 같이 하니 그 죄가 넷이요.
- ⑤ 임금의 과오를 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감히 못할 바이거늘 외국공사관에 투서하여 스스로 잘못 말하기를 도모하니 그 죄가 다섯이요,
- ⑥ 民이 官과 더불어 체모가 스스로 다르거늘 官人을 위협하여 억지로 會에 나 오게 하니 그 죄가 여섯이요.
- ⑦ 府와 部의 행정은 비우는 것이 불가한 데 관청에 난입하여 喝命해서 사무를 못보게 했으니 그 죄가 일곱이요,
- ⑧ 재판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늘 호소할 것이 있다 창탁하고 무리를 이루어 끝을 붓게 하니 그 죄가 여덟이요.

³⁰⁾ 議政府 編.《各部去照存案》(奎 17242) 제2책. 광무 2년 12월 22일, 照會中樞院.

³¹⁾ 議政府 編, 《各部去照存案》(奎 17242) 제3책, 광무 2년 12월 23일, 照覆 第1號.

^{3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本省往來信〉, 1898년 12월 27일, 發第87號 萬民共同會에의 勅語.

- ⑨ 군대를 파견하여 문을 막는 것은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거늘 분을 이기지 못해 투석해서 중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그 죄가 아홉이요,
- ⑩ 누가 부름에 즉각 와서 대령할 것이거늘 妖言을 선동하여 한결같이 거역하 였으니 그 죄가 열이요,
- ① 역적은 용서치 않고 사람사람이 得誅할 것이거늘 무리 가운데 말을 열어 임용할 것을 도모하니 그 죄가 열 하나이다(《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1월 13일, 勅語).

황제는 이 밖에 세세한 위반은 다 지적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가로되 충군한다, 가로되 애국한다 한 것이 일찍이 不善한 것이 아니로되, 끝에 가서는 가로되 悖라 하고, 가로되 亂이라 해도 그 이름을 도피할 바가 없으니 疑懼之心이 이로 말미암아 난 바이라"33)고 하였다.

또한 황제는 詔書를 내려, ① 혹 벌레같은 무리가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다시 이런 습관에 따라 열씩 다섯씩 길거리에서 모여 會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파수 순검과 병정들이 철저히 규찰하여 엄금할 것이며, ② 閩巷에 한산한 백성들이 방청이라 일컫고 거리에서 구경하는 자도 역시 금단하도록 하였다.34이것은 재차 만민공동회의 집회 시도와 그 구경까지도 엄금한 조치였다.

또한 경무청은 내부훈령을 각 방곡에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근일 民會가 충애한다고 거리에서 개최한 것이 처음에는 폐단을 개혁하려는 데서 나왔으나, 끝에는 외국 공관에 투서하여 본국을 비난하고 부호를 토색하며 정부 관인들을 협박 능욕하니 이것은 이미 충순이 아니며, ② 중추원에서는 역적수괴 등용을 당연한 일로 동의하고 화응한 자가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박영효의 무리와 安駒壽의 당이 그 중에 혼재하여 화란을 도모한 것이므로 이무리의 수괴는 반드시 다스릴 것이며, ③시민이 會에 참가하거나 방청하는 것을 금지하니 어기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포고하였다.35)

계엄상태 아래에서 황제와 수구파정부의 연이은 강경 조치가 취해지고, 뒤이어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의 중견간부들에 대한 체포구금이 시작되었다.

³³⁾ 鄭 喬,《大韓季年史》上,403\.

^{34)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1월 13일, 詔.

^{35)《}皇城新聞》, 1898년 12월 26일, 雜報〈警廳告示〉.

만민공동회 회장 高永根은 12월 28일 鄭 喬가 지은 상소를 회원 金忠燮으로 하여금 呈納시켜 황제의 폭압을 만류하려 했으나 비서원이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³⁶⁾

《독립신문》은 12월 28일 〈공동회에 대한 문답〉이라는 논설을 게재해서 만 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적극 옹호하였다.³⁷⁾ 《황성신문》은 독립협회가 발간한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와 '조칙 5조'를 게재하여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옹호하고 황제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려고 하였다.³⁸⁾

독립협회는 독립관내에서 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이것도 황제와 정부의 탄압으로 이룰 수 없었다.39) 만민공동회뿐만 아니라 독립협회도 1898년 12월 25일 황제의 군대와 경찰의 탄압을 받고 사실상 해산 상태에 들어갔으며, 지방에서도 1월초부터 칙령에 의하여 지방관이 독립협회 지회를 해산시키기시작했고,40) 황제 고종은 다시 1899년 1월 15일 조칙으로서 지방관과 진위대로 하여금 독립협회 지방지회를 엄금하도록 재차 명령하였다.41)

그리하여 19세기말 열강의 침략의 소용돌이속에서 자주부강한 근대국민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의 민권을 신장하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려고 강렬한 자주민권 자강운동을 전개했던 독립협회와 만민공 동회는 1898년 12월말 황제 고종 및 친러 수구파와 외세의 야합에 의해 무 력 탄압을 받고 강제 해산당하고 말았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 강제 해산 후 황제와 수구파정부의 민회 간부들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다. 황제는 1899년 1월 2일자로 중추원 의관 申海永·魚瑢善·卞河進·李承晚·洪在箕 등을 면관시켰으며, 劉 猛·鄭恒謨·洪正厚 등을 1개월 감봉에 처하였다.42) 또한 1월 21일에는 高永根을 파면했으며, 정항모·玄濟昶·梁弘默·李建鎬 등은 의원면직되어 독립협회 세력은 중추원

³⁶⁾ 鄭 喬、《大韓季年史》上、405~407\.

^{37) 《}독립신문》, 1898년 12월 28일, 〈공동회에 대한 문답〉.

^{38) 《}皇城新聞》, 1898년 12월 29일, 附錄,

^{39) 《}독립신문》, 1898년 12월 29일, 잡보〈통상회〉,

^{40) 《}皇城新聞》, 1899년 1월 6일, 雜報〈支會有電〉.

⁴¹⁾ 鄭 喬,《大韓季年史》下,5쪽.

^{42) 《}官報》, 광무 3년 1월 6일.

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43)

황제와 수구파정부가 민회 지도자들을 투옥하려 했으므로 고영근·林炳吉 등은 일본인 집에, 윤치호·윤시병·이승만 등은 미국인 집에 은신하였다.44) 수구파들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 간부들을 체포·처단하기 위해 30여 명의 자객단을 편성하는 형편이었다.45)《獨立協會沿革略》에 의하면, 이 무렵에 약430여 명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중견간부들이 한 때 체포당하였다.46)

수구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음모를 꾸며 민회 지도자들의 대량 투옥을 획책하였다. 윤치호는 그의 부친 윤웅렬이 황제에게 청탁하여 元山監理로 임명해서 보호차 지방으로 쫓아 보내었다.47) 수구파들은 박영효와 내통해서 황제 폐위와 共和制 시행 음모를 기도했다는 혐의로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의 소장신진파인 이승만・延弘植・延弘基・林晚容・金鳳九・趙文植을체포 투옥했으며, 놓친 崔廷德・정항모 등에게 긴급 체포령을 내렸다.48)

그러나 한편으로 황제와 수구파정부는 수구파·보부상패들에게는 사면을 시행하였다. 백령도 유배 7년 죄인 俞箕煥과 李基東에게는 특사령을 내렸고,49) 李容翊의 체포령을 사면했으며,50) 趙秉式・閔種默 등의 체포령을 사면하고 金禎根을 특별 석방하였다.51)

황제와 수구파는 또한 정부내의 개혁적 관료들인 박정양·민영환·한규설 ·李學均·李鍾健·이상재 등을 모두 파면하고, 완전히 수구파 중심의 정부 를 편성하였다.52) 1899년 1월말까지 구성된 정부대신과 요직들을 보면, 沈相 薫이 의정부 참정, 유기환이 법부대신, 閔泳綺가 탁지부대신, 申箕善이 학부 대신, 閔丙漢이 내부대신서리, 閔丙奭이 군부대신, 洪鍾宇가 의정부 총무국

⁴³⁾ 鄭 喬、《大韓季年史》下、15쪽、

⁴⁴⁾ 鄭 喬、《大韓季年史》下、2쪽.

⁴⁵⁾ 鄭 喬、《大韓季年史》下、5・12쪽.

^{46)《}獨立協會年歷略》 중의〈獨立協會〉.

⁴⁷⁾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9년 1월 5일.

⁴⁸⁾ 法部 編,《司法稟報(乙)》(奎 17279) 제14책, 광무 3년 1월 11·21일, 報告書 第2·7號.

^{49)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유력 11월 19일, 詔,

⁵⁰⁾ 鄭 喬,《大韓季年史》下,6~7\.

^{51)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2월 9일, 詔.

⁵²⁾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9년 1월 23일.

장, 이기동이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李根鎔이 경무사, 李漢應이 한성판 윤, 이기동이 참령, 吉泳洙가 참위에 임명되었다.53) 이용익은 궁내부소관 삼 정 및 광무감독에 임명되었다가 결국 典園局長으로 복귀하였다.54) 만민공동 회와 독립협회에 의해 규탄받던 가장 부패 무능한 사람들이 모두 권력의 자리에 복귀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는 보부상들의 진출이었다. 보부상 단체 간부 46명이 모두 정부의 중견 관직을 차지했으며, 길영수는 곧 농상공부 상공국 장으로 영전하였고, 전국 각 군의 보부상들이 집권에 참가했다고 속속 상경하여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55)

황제와 수구파정부는 뿐만 아니라, 1899년 3월 16일 칙령을 발표하여 보부상단체의 복설을 특별하고, 商務所를 商務會社라고 개칭하여 처음에는 심상훈을 都社長, 민병석을 사장, 이기동을 부사장, 길영수를 都司務, 朴有鎭・金光熙를 부사무로 임명했다가, 5월 18일에는 申箕善을 도사장, 민영기를 句管사장, 李根鎔을 도사무장에 신임하고, 칙령 제19호로써〈商務社規則〉을 반포하여 각종 특권을 허여하였다.56)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수구파와 보부상들이결탁하여 권력과 금권을 장악한 것이었다.

황제와 수구파·보부상 정부는 뿐만 아니라 1899년 5월 22일에는 중추원 관제까지 완전히 개정하여 의관을 6등으로 대폭 격하하고 전원 칙임·주임 으로 하여 대기케 헸으며, 조병식을 의장으로 임명하였고, 주로 수구파 퇴임 관료들과 보부상들을 의관으로 임명하여 중추원을 정부 자문도 제대로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57)

그리하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해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민족역사상 대개혁이 요청되었던 1899년은 도리어大反作用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愼鏞廈〉

^{53) 《}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12월 1일 및 19일, 詔.

⁵⁴⁾ 尹致昊、《尹致昊日記》 5. 1899년 2월 10일.

⁵⁵⁾ 鄭 喬,《大韓季年史》下, 15\.

⁵⁶⁾ 鄭 喬,《大韓季年史》下, 15~19쪽.

⁵⁷⁾ 鄭 喬、《大韓季年史》下, 19쪽.

3.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역사적 의의

1) 독립협회 · 만민공동회운동의 실패 원인

19세기말 열강의 침략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속에서 대한제국의 국정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자주 부강한 立憲代議國家를 건설하여 자주독립의기초를 공고히 만들려던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의의가 큰 운동이 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강제 해산당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1)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실패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황제 및 수구파세력과 러시아 및 일본 등 외세의 야합에 의한 무력 탄압을 들 수 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국정 전반의 대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수구 파세력과는 정치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정치체제 개혁운동은 전제군주제를 立憲代議君主制로 개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제군주인 고종황제의 이해에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제 고종은 전제군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 독립협회 개혁파보다는 친러 수구파에 의존하려 하였다. 그러나 개항 후 수많은 격변을 겪는 동안에 언제나 승세나

¹⁾ 姜萬吉, 〈大韓帝國의 性格〉(《創作과 批評》 48, 創作과批評社, 1978).

姜在彦、〈獨立新聞·獨立協會·萬民共同會〉(《朝鮮史研究會論文集》9. 1972).

宋炳基、〈光武改革研究〉(《史學志》10, 檀國大史學會, 1976).

愼鏞廈、〈獨立協會의 社會思想〉(《韓國史研究》9, 1973).

^{-----,〈}獨立協會의 自主民權自强運動〉(《獨立協會의 民族運動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院, 1974).

^{----, 〈}光武改革論의 問題點〉(《創作과 批評》49, 創作과批評社, 1978).

^{----, 〈}獨立協會의 議會主義思想과 議會設立運動〉(《李海英教授追念論文集》,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1985).

柳永烈、〈獨立協會의 民權思想研究〉(《史學研究》22. 1973).

千寬宇、〈獨立協會의 國會開設運動〉(《韓國史의 再發見》,一潮閣, 1975).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안전함을 터득한 고종은 입헌대의군주제로의 개혁이 대세가 되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 점은 황제 고종이 만민공동회의 강력한 운동에 부딪혀 그가 가장 싫어하는 박영효가 추천되었을 때에도 만민공동회를 무마하기 위해 박영효를 소환 기용해서 개혁정책 채택을 생각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2) 따라서 당시 수구파를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던 독립협회・만민공동회로서는 수구파와 외세가 결탁하여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대항하지 않으면 승리하여 대개혁을 추진할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세가 황제 및 수구파와 결탁하여 적대 행동을 한다면 문제는 다른 것이었다. 러시아는 대한제국내에 뿌리가 약했고 이미 '아관파천' 후에 수구파와 결탁하여 '친러 수구파'를 형성한 것을 독립협회가 압도했으므로 예견된 것이었지만, 새로이 일본세력이 수구파와 결탁하여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적대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힘겨운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독립협회가 궁극적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항할 독립세력이며 저항세력이라고 보고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붕괴시키려고 기도하였다. 특히 만민공동회가 대두하여 독립협회가 큰 대중적 기반을 갖게되자 일본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내심 매우 두려워해서 이들의 와해 기회를 노리었다. 3) 일본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가 1898년 12월 초 일본에 휴가 중일 때 《The Japan Daily Mail》紙가 가토의 주장을 보도했는데, 그는 "한국의 독립은 이름뿐이니, 서구열강이 간여하기 전에, 그리고 보부상과 독립파와 왕당파들이 서로 목을 자르는 것을 그치고 독립파에 의해 한국이 부강해지기 전에, 일본은 너무 늦기 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전권공사 가토는 이러한 입장에서 비밀훈령을 받고 서울에 귀임하자 1898년 12월 15일과 18일에 두 차례나 고종을 알현해서 군대 동원에 의한

²⁾ 鄭 喬, 《大韓季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57), 392\.

お殷植、《韓國痛史》(《朴殷植全書》上,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75), 182平.

⁴⁾ *The Japan Daily Mail*, December 6, 1898, Japan and Korea. 《駐韓美國公使館報告》(Communica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U.S. Representative in Korea: H. N. Allen), 문서번호 167, 1898년 12월 23일.

만민공동회 탄압을 적극 권고한 것이었다.5) 또한 일본 전권공사는 1898년 12월 하순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독립협회 일부 급진파에게는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박영효를 소환 기용하도록 공작적인 차원에서 적극 권고하고, 고종에게는 군대 동원에 의한 무력 탄압을 적극 권고하여, 황제 및 수구파와 결탁해서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을 실패케 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6)

둘째,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지도자들의 지도력의 부족을 실패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의 지도력의 빈곤은 가장 박력있는 선각적 개화파 인사들이 갑신정변때 전멸하다시피 된 사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지도자들은 교육자적 자질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나약했고, 또 갑신정변때의 교훈에 집착하여 민중보다 앞서서 권력에 파고들거나 정권을 장악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만민공동회운동의 영향으로 11월 하순~12월 중순까지에는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 보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이 고조되었을 때에는 민중이 앞장서고 지도자들이 이에 끌려 다니는 형편이었다.

셋째, 독립협회·만민공동회내의 소수 과격파·급진파의 사려 깊지 못한행동이 그 운동의 실패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을 조성하였다.

주로 1898년 11월부터의 만민공동회 투쟁과정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 낸 과격파·급진파 청년들은 독립협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주 독 자행동을 전개했으며, 마침내는 중추원에서 박영효를 천거하고 만민공동회에 서 이를 추인받는 모험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7 그러나 당시의 조건에서 박영효 천거는 너무 당돌하고 모험적 행동이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만민공 동회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크게 약화되고, 황제와 수구파에게 탄압당하는

^{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國史編纂委員會, 1989)、〈機密本省往信〉, 1898년 12월 10일, 機密 第54號 事變에 關한 一次謁見의 件 및 1898년 12월 13일, 機密 第56號 韓帝 謁見始末 및 敦化門 親臨의 件.

鄭 喬,《大韓季年史》上,390\.

⁶⁾ 鄭 喬、《大韓季年史》上、390·393\.

⁷⁾ The Independent, December 27, 1898, Molayo's Reports.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다.⁸⁾ 특히 '박영효 천거'에는 박영효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독립협회·만민공동회 붕괴를 목적으로 한 일본측 공작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급진파들이 매우 경솔했음을 알 수 있다.⁹⁾

뿐만 아니라 급진파들은 독립협회의 궁극적 목표였으나 당시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공식 논의를 삼가하게 되어있던 '共和制'를 너무 자주 논의함으로써 수구파들의 모함과 황제의 의혹을 사게 했으며, 황제 고종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대한 탄압에 구실을 제공하였다. 일찍이 朴殷植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실패의 주요 원인의 하나를 너무 급진적인 곳에서 찾았다.10) 또한 급진파의 일원이었던《獨立協會沿歷略》의 저자도 "너무 과격하던 余 등 13인으로 하여 우리 청년동지가 일반에게 많은 피해를 당하게 한 죄과를 지금와서 느끼는 바이다"11)라고 하여 급진파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넷째, 운동을 '도시' 중심으로 전개하고, 농민층 속으로 파고들려는 활동 부족이 실패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는 주로 대도시에서 도시민들의 자발적 참가에 의존했을 뿐, 적극적으로 지방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특히지방에서 강대한 잠재적 세력을 갖고 있던 농민층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참가시키고 농민층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 사실은 독립협회가 지방지회를 조직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지방지회를 조직하려 하지 않고 지방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지회 조직의 청원이 있을 때라야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이를 허가한 사실이라든지, 인구가 3,000명 이상의 지방 '소도시'에만 이를 허가한 사실에서도 이를 할 수 있다.12) 이 때문에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서울과 지방의 소도시 중심이 되고, 주로 시민층과 도시지식인 중심의 운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농민층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되었을 뿐이지 적극적인 '참가층'이 되지 못하고 말았다.

⁸⁾ 尹致昊,《尹致昊日記》5(國史編纂委員會, 1975), 1898년 12월 29일.

⁹⁾ 尹致昊. 위의 책. 1898년 12월 27일.

¹⁰⁾ 朴殷植,《韓國痛史》, 182~183\.

^{11)《}獨立協會沿歷略》 중의〈獨立協會〉.

^{12) 《}독립신문》, 1898년 12월 15일, 잡보〈본회답장ㆍ지회인가조례ㆍ지회세칙〉참조.

독립협회가 전국에 걸쳐서 적극성을 띠고 체계적으로 지방지회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은 12월 13일부터인데, 이것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강제해산 당하기 12일 전이어서 너무 늦은 것이었다. 만일 독립협회가 적극적으로 1898년 봄이나 늦어도 여름에 지방지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완료하고 강화하여 지방에서의 독립협회 참가층을 확대했더라면 사태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수구파들이 지방에서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세력을 걱정하지 않고 서둘러 전국 지방의 보부상들과 수구세력을 서울로 일거에 불러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방 농민층에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세력을 양성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지나치게 도시에 편향되어 있었던 것이다.

2)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역사적 의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 요인들의 복합으로 당장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그 후 한국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 치고 한국 민족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역사적 의의가 큰 운동이 되었다.

첫째,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19세기말 열강이 이권침탈과 식민지화 정책을 본격화한 위험한 해인 1898년에 만민공동회 투쟁을 통하여 이를 역전시켜서 러시아와 일본 등 외세를 일단 한반도에서 후퇴시키고, 마침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세력균형'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세력균형이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만 6년간 지속되어 독립 강화와 자주 개혁을 위한 시간을 번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집권하여 이 기간에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대개혁을 단행하고 정치체제도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 군주제로 개혁하여 국민을 참정시켜 민권을 가진 국민의 실력으로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게 하려고 하였다.

특히 1898년 4월~1904년 2월까지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세력균형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성과로 쟁취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립협회 · 만민공동회운동에 의하여 개화독립사상과 국민 대중이 결

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열강의 침략 앞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상과 나라를 구할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국민 대중의 결합이 매우 중요하였다. 19세기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상은 상대적 의미에서 개화독립사상이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는 이러한 개화독립사상을 민중과 결합시키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이 때의 민중은 도시 시민층과 지식인층과 청소년층이 중심이 되었지만,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의해 개화독립사상과 민중이 결합했기 때문에, 장기동태적으로 볼 때에 이 시대 이후에는 민중에 의해 자주근대화운동이 전개되고, 민족운동의 주체와 추진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정책을 갖고 역사 발전의 대세에 합치되어 전개된 것이었다.

셋째,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자주독립사상을 전국민에게 널리 확산 보급시켰으며, 또한 열강의 이권침탈을 민회 존속기간에는 강력히 저지하고 독립을 강화하는 데 실제로 크게 공헌하였다.

독립협회가 민족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事大'를 온건한 좋은 사상으로 생각하고 '독립'은 불온한 사상으로 교육받은 낡은 사고가 유생들과 국민들 사이에 많이 침전되어 있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는 맹렬한 민족운동을 통하여 '독립'을 용어마다 강조하면서, '사대'가 망국의 길이며 자주독립만이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올바른 사상임을 계몽하여, 전국민에게 자주독립사상을 널리 보급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또한 독립협회·만민공동회는 열강의 이권침탈 정책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황제의 이권양여를 반대하여 비판하고 열강의 이권침탈에는 강렬한 시위운 동을 전개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그 결과 적어도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이권침탈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1898년 12월 말 해산당할 때까지 그 존속기간에는 새로이 열강이 이권을 침탈하는 것은 실제로 막아내었다. 열강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존속기간에는 그들의 이권침탈 야망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이 시기 열강의 이권침탈을 반대하여 저지시키고 열강의 부당한 간섭정책을 비판하여 물리친 것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강화에 크게 공헌한 것이었다.

넷째,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당시와 그 후의 한국의 개혁정책에 부 분적으로 반영되어, 구한말 일부의 사회문화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우선 열강의 이권침탈을 저지시키고 독립을 강화하는 데 일시 성공하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교육과 문화와 산업정책 부문에서 독립협회·만민공동 회의 개혁안이 일부 반영되고 채택되었다. 신식학교 설립과 신교육 실시, 서양 식 의학교의 설립, 상공학교의 설립, 국사와 국문의 교육과 보급, 민족문화· 예술의 존중과 연구 개발, 자본주의 경제조직 해설과 회사·은행·자유 상업의 발전정책 등은 독립협회의 사상·정책·개혁안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다섯째,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에 의하여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 주주의와 공화주의사상'이 한국인의 사상으로 확립 발전하게 되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는 '자유민권사상' '민권론' 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사상을 널리 보급시켰다. 또한 군주제의 결함을 지적하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화주의사상을 신진청년들 사이에 널리 보급하기 시작한 것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였다. 즉 한국 역사에서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 공화주의 사상이 정립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서 본격적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의 민족주의와 자주독립 사상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이르러 민주주의사상과 결합함으로써 '근대적'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큰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었다.

여섯째,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애국 자들과 애국세력을 양성해 내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한국근대사에서 독립협회 이후의 애국운동의 주체세력을 실증적으로 고찰해보면, 그들의 거의 모두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계몽을 받고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에 참가해서 애국자·애국세력으로 형성 발전되었음을 바로알 수 있게 된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동시에 애국세력 양성운동의내용을 결과적으로 갖추게 된 것이었다.

일곱째,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은 그 뒤를 이은 한말 애국계몽운동, 여성해방운동, 민족문화운동, 일부 측면의 의병운동, 항일 독립운동, 3·1운동의 원류를 이룬 것이었다.

특히 한말 애국계몽운동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을 직접 계승한 민족운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가 자매단체로서 창립을 지원한 贊襄會(順成會)는 바로 한국 근대여성운동의 효시가 되었으며, 독립협회가 강조한 국사연구와 교육, 국어국문 연구와 교육, 민족문화·예술의 창조와 연구와 교육등의 운동은 직접 민족문화운동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항일 독립운동으로서의 3·1운동의 비폭력시위 방법, 만세시위 방법 등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민족운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한말의 각종 국권회복운동과 일제하 3·1운동이 민중에 의한 애국운동으로 전개된 전통의 가장 가까운 원형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에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일부 일본인 학자 등 다수의 외국학자들은 개항 후 한국인의 사상과 운동에는 외세에 저항하는 강렬한 저항민족주의(예컨대 동학농민혁명운동)는 있었으나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근대 시민적 민족주의와 자주 근대화사상·자유민권사상과 운동이 결여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채 언젠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로 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선점한 것에 불과하다는 역사해석을 자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은 이미 19세기말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근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수립 발전시킬 수 있는 근대 시민적민족주의와 그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을 위한강렬한 민족운동까지 전개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는이미 19세기말에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설립까지 추진했었다. 그러므로러시아와 일본 등 외세가 야합하여 황제 고종과 수구파를 지원해서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구국개혁운동을 탄압하고 침략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한국민족은 이미 19세기말에 자기의 힘으로 자유롭고 독립된 자주 부강한 근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수립할 수 있었음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이 잘 증명해 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찾 아 보 기

[7]

가토 다카아키 加藤高明 109 가토 마스오 加藤增雄 328 갑신정변 甲申政變 176 갑오개혁 甲午改革 176, 262 개진협회 開進協會 265 개화독립론 開化獨立論 259 거문도점령사건 巨文島占領事件 거빈스 J. H. Gubins 高斌士 130 건양 建陽 208 건양협회 建陽協會 $184, 188 \sim 192,$ 200, 205, 207, 208 건청궁 乾淸宮 36 게일 James S. Gale 311 경부철도 京釜鐵道 118.135.145.146. 경부철도관리국 京釜鐵道管理局 146 경부철도주식회사 京釜鐵道株式會社 145, 146 〈경부철도합동조약〉〈京釜鐵道合同條約〉 135, 145, 146 경성학당 京城學堂 327 경원선 京元線 141 경의철도 京義鐵道 118, 135, 140, 145, 159, 160, 168, 169 〈경의철도차관협정〉〈京義鐵道借款協定〉 159 경인철도 京仁鐵道 114, 118, 143, 144 경인철도인수조합 京仁鐵道引受組合 119, 144 경인철도합자회사 京仁鐵道合資會社 119, 144

고무라 쥬타로 小村壽太郎 40, 52, 65, 85, 97, 108, 189, 300 고영근 高永根 400, 422 고영희 高永喜 201, 206, 208, 377, 390, 411 고종 高宗 45, 53, 63, 67, 95, 98, 100, 295, 388 고종 환궁 高宗 還宮 68, 79 곳체 Carl Christian Gottsche 居最 128 공거제도 公擧制度 공병대 工兵隊 55 공조원 龔照瑗 86 공홍식 孔洪植 342 과실전 果實廛 220 관립 안동소학교 官立 安洞小學校 관민공동회 官民共同會 163, 234, 375 관민공치 官民共治 275 관평각 觀平閣 216, 296 광무국 鑛務局 115, 159 〈광무학교관제〉 〈鑛務學校官制〉 광무협회 光武協會 265, 309, 376 광산감독서 鑛山監督署 134 광산이권 鑛山利權 337 광창양행 Bennet & Co. 廣昌洋行 130 교육입국조서 敎育立國詔書 283 구드쉬미트 Gutschimdt 구본신참 舊本新參 구스노세 유키히코 楠瀨幸彦 33 국문동식회 國文同式會 316 국민국가관 國民國家觀 287 국민군대관 國民軍隊觀 287 국민자유권론 國民自由權論 262

국민참정권론 國民參政權論 268	김도현 金道鉉 49
국민평등권론 國民平等權論 260	김도화 金道和 49
국민협회 國民協會 376	김두현 金斗鉉 237,388
국정비판권 國政批判權 268	김명규 金明圭 377, 390, 400, 411, 422
국정참여권 國政參與權 268	김명제 金明濟 405, 420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 176,276	김병시 金炳始 45,63,328
군민공치 君民共治 275	김복한 金福漢 49
군민합력설 君民合力說 266	김양한 金亮漢 199
군사교관 軍事敎官 69,72	김영석 金永錫 199
군회 郡會 269	김영준 金永準 340, 421, 422
궁내부 宮內府 160	김윤식 金允植 20, 40, 191
궁중정략 宮中政略 23	김재풍 金在豊 341
권동수 權東壽 95, 422	김정근 金禎根 388, 422
권세연 權世淵 49	김종한 金宗漢 40, 201, 206, 208, 214,
권재형 權在衡 201, 206, 208, 224, 296,	402
310, 377, 390, 411, 413	김중환 金重煥 218, 295
권형진 權瀅鎭 40, 42, 47	김지선 金止善 185
귀성금광 龜城金鑛 132	김창해 金昌海 198
균등경작론 均等耕作論 277	김하락 金河洛 48
그레이 G. Grei 123	김현기 金顯琪 198
그레이트하우스 Clarence R.	김홍륙 金鴻陸 218,328
Greathouse 具禮 59, 332, 345	김홍륙 독다사건 金鴻陸 毒茶事件
그로데고프 N. I. Grodegov 60	321, 342, 347
《근대조선이면사》 《近代朝鮮裏面史》	김홍집 金弘集 19, 40, 198, 251
265	김홍집내각 金弘集內閣 23, 42, 92,
글리이유 Antoine Grille 140	179, 181, 192, 200, 299
기기국 機器局 287	꼴랭 드 쁠랑시 V. Collin de Plancy
기기창 機器廠 287	葛林德 140
기르스 N. K. Girs 82,87	
기우만 奇宇萬 48	[∟]
기초위원 起草委員 241	
기쿠치 겐조 菊池謙讓 265	나수연 羅壽淵 237
킨즈부르그 G. G. Ginsburg 126	나카무라 마나미 中村眞南 178
길영수 吉永洙 359,404	나카무라 타테오 中村楯雄 36
김가진 金嘉鎭 20, 185, 187, 188, 191,	남궁억 南宮檍 201, 206, 208, 215, 338,
199, 201, 205, 206, 377, 401	348, 349, 354, 367, 388
김각현 金珏鉉 201	남녀평등론 男女平等論 262
김구현 金龜鉉 237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65
김덕구 金德九 416	남로전선 南路電線 137, 139, 159
김덕구 만민장 金德九 萬民葬 416	남만리 南萬里 42

남정철 南廷哲 322, 390 네뽀로지네프 Williams Neporozhnev 123, 125 246, 343, 347, 349 노륙법 孥戮法 노르웨이식 포경법 Norway式 捕鯨法 노무라 야스시 野村靖 노응규 盧應奎 농광회사 農鑛會社 163 니시 도쿠지로 西德二郎 54, 83, 103 니스첸스키 Nisichensky 122 니이노 도키스케 新納時亮 38 니콜라이 2세 Nikolai Ⅱ 69, 91, 104

[=]

다나카 미츠아키 田中光顯 26 다우치 타케시 田內武 265 다이 William Mc, Dye 茶伊 36 다케다 노리유키 武田範之 29 단발령 斷髮令 42, 44, 47 달성교회 達成敎會 216 달성회당 達成會堂 220 당현금광 堂峴金鑛 129, 148, 162, 337 《대동역사》 《大東歷史》 319 대원군 大院君 32, 33, 36, 39, 42, 43, 99.176 대일차관 對日借款 68 대정동 구세교학당 大貞洞 救世敎學堂 220 《대조선독립협회회보》 《大朝鮮獨立協 217, 221, 252, 295, 306, 307 會會報》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327 대한철도회사 大韓鐵道會社 136. 159 〈대한철도회사전담협정〉 〈大韓鐵道會 社全擔協定〉 159 도야마육군소년학교 戶山陸軍少年學校 176 도약소 都約所 348, 350

독다진어사건 毒茶進御事件 246 독립공원 獨立公園 200, 293, 298 독립관 獨立館 200, 217, 223, 293, 355 독립기념물 獨立記念物 294 독립문 獨立門 200, 204, 205, 216, 219, 293, 294, 296 독립문 정초식 獨立門 定礎式 218, 296 《독립신문》 《獨立新聞》 192, 193, 195, 221, 295, 299, 301, 303, 316, 394 독립협회 獨立協會 161, 175, 192, 200, 203, 205, 207~209, 233, 249, 251, 293, 320, 324, 333 독립협회규칙 獨立協會規則 211, 294 《독립협회연역략》 《獨立協會沿歷略》 독립협회윤고 獨立協會輸告 210, 295 독립협회 토론회 獨立協會 討論會 314 독립협회 회표 獨立協會 會標 237 독소위원 讀疏委員 235, 240 동로선유사 東路宣諭使 65 동문학 同文學 283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 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 東洋鑛業開發 株式會社 116 동현소학교 銅峴小學校 220

[2]

람스도르프 V. N. Lamsdorf 71, 103, 108 러시아 군사교관단 露西亞 軍事教官團 72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露西亞의 絶影島 租借 333, 334 러일전쟁 露日戰爭 61, 104, 127 러한은행 露韓銀行 106 로바노프 A. B. Lobanov-Rostorskii 54, 61, 71, 90, 104, 105 로바노프·야마가타 議定書 Lobanovr

-山縣 Protocol 62, 72, 102, 107, 142

로제티 Carlo Rosetti 魯士德 141

로젠 R. R. Rosen 106

로젠-니시 協定 Rosen -西 Convention 107, 142, 331

르페브르 G. Lefevre 盧飛鳥 56

르젠드르 Charles W. Legendre 李善得 361, 377

$[\Box]$

마선령 馬先寧 123 마야하라 츠토모토 馬屋原務本 33 마준영 馬駿榮 341 마키 쿠마토라 牧態虎 36 마튜닌 N. G. Matiunin 106, 329, 335 만민공동회 萬民共同會 161, 231, 248, 252, 321, 327, 391 만한교환론 滿韓交換論 106, 330 만한교환정책 滿韓交換政策 145 망문상전 望門床廛 220 《매일신문》 《每日新聞》 309, 394 매판 덕대 買辦 덕대 166 메이어 상사 E. Mever & Co.⇒세창양행 면주전 綿紬廛 220 면회 面會 269 명례궁 明禮宮 79 모군상회 募軍商會 Morgan Company 131 모르간 Pritish Morgan 摩賡 131 모오스 J. R. Morse 毛於時 116, 118, 135, 143 무관학교 武官學校 288 무라비예프 M. N. Muraviev 106, 무라사키 시로 紫四郞 93 무츠 무네미츠 陸奧宗光 17, 43, 58, 82

문경호 文耿鎬 232 문석봉 文錫鳳 179 문일평 文一平 207, 224 뮐렌도르프 Paul Georg von Mollendorff 穆麟德 127, 130 미야모토 타케타로 宮本竹太郎 미우라 코로 三浦梧樓 22, 25, 26, 28, 29, 31, 39, 52, 94, 96 민강호 閔康鎬 민경식 閔景植 359 민병석 閔丙奭 368, 422 민병한 閔丙漢 398 민비 閔妃 31, 35, 38, 40, 43, 93, 96 민비시해사건 閔妃弑害事件 179 민상호 閔商鎬 42, 179, 183, 201, 206 민영기 閔泳綺 296, 322, 347, 350, 353, 359, 390, 411, 419, 422 민영익 閔泳翊 114 민영준 閔泳駿 423 민영환 閔泳煥 69, 71, 72, 104, 105, 353, 367, 368, 411 민용호 閔龍鎬 48 민종묵 閔種默 241, 323, 325, 328, 333, 390, 394, 422 밀스 H. R. Miels 121

[8]

박기종 朴琪淙 159 박 선 朴 銑 42 박성춘 朴成春 377 박세환 朴世煥 310 박승조 朴承祖 206, 216 박언진 朴彦鎭 367 박영효 朴泳孝 19. 23. $92 \sim 94.176 \sim$ 178, 198, 262, 286, 423 박유진 朴有鎭 409 박정양 朴定陽 19, 40, 63, 100, 177, 199, 342, 353, 355, 367, 368, 377, 388, 391, 400, 411

박정양내각 朴定陽內閣 93, 193, 299, 300 박제순 朴齊純 368, 377, 390, 398 반노프스키 P. S. Vannovskii 70. 87 반철도투쟁 反鐵道鬪爭 169 방한덕 方漢德 388 배재학당 培材學堂 200, 205, 225, 327 백목전 白木廛 220 백민회 白民會 421, 422 버틀러 Buttler 巴爾 130 법국민변 法國民變 365 법전정략 法典政略 23 베조브라조프 A. M. Bezobrazov 125 변하진 卞河淮 237, 389 보각 대령 Colonel Vogack 60 보민협회 保民協會 265 보부상 褓負商 49, 55, 404, 412 보스트윅 Hany R. Bostwick 甫時旭 119, 153 보신사 保信社 265, 376 보안회 輔安會 163 봉비위원 奉批委員 241 봉소위원 奉疏委員 235, 240 〈부산구설해저전선속약〉 〈釜山口設海 底電線續約〉 138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 〈釜山口設海 底電線條款〉 136, 159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속약〉 〈釜山口 設海底電線條款續約〉 137 부산수산회사 釜山水産會社 155 북로전선 北路電線 138, 160 브라운 J. M. Brown 栢卓安 59. 121. 323 브리티쉬 신디케이트 British Syndicate 비숍 Isabella Bird Bishop 64 뿌챠타 D. V. Putiata 70, 73, 74, 322

[人]

사바틴 Sabatin 薩巴丁 36, 217 사사 마사유키 左左正之 93 사사키 타다시 佐佐木正 38 사소위원 寫疏委員 235, 240 사이온지 킨모치 西園寺公望 51 사이토 슈이치로 齊藤修一郞 93 사찰위원 査察委員 241 사토우 Ernest Mason Satow 58, 61, 96 산림 山林 275 삼국간섭 三國干涉 17, 18, 90, 92 삼림조약 森林條約 125 〈삼림협동경영약관〉 森林協同經營約款 127 〈삼림협동조약〉 森林協同條約 127 삼정물산 三井物産 153 〈상무규칙〉 〈商務規則〉 403 〈상무회의소규례〉 〈商務會議所規例〉 184, 185 상봉루 相鳳樓 220 서광범 徐光範 19, 40, 64, 176 서로전선 西路電線 137, 139, 160 서북철도국 西北鐵道局 136, 159 서상우 徐相雨 343, 347 《서유견문》《西遊見聞》 250 서재필 徐載弼 175, 177, 178, 180, 182, 188, 189, 192, 198, 199, 222, 224, 231, 232, 237, 249, 274, 293, 296, 297, 299, 304, 308, 329, 423 서정순 徐正淳 353, 377, 390, 400 석유직수입회사 石油直輸入會社 선어위원 選語委員 241 선천광산 宣川鑛山 130 세미운송권 稅米運送權 128 세베렙 Shevelev 余維略 123 세창양행 世昌洋行 128, 129, 337

소정리역 小井里驛 169 송영수 宋寧洙 425 송헌빈 宋憲斌 206, 215 수보로푸 M. I. Suvorov 123 수산조합 水産組合 156 수안금광 遂安金鑛 132, 152, 153, 166 수안금광합자회사 遂安金鑛合資會社 166 수안동광 遂安銅鑛 140 수진상전 壽進床廛 220 수하동소학교 水下洞小學校 216, 220 쉬쉬킨 Shishkin 88 스기무라 후카시 杉村濬 33 스다르체프 Startsev 123 스즈키 시게모토 鈴木重元 36 스즈키 쥰켄 鈴木順見 33 스탠다드석유회사 Standard石油會社 185 스트렐비츠키 Strelbitzky 70, 335 스페이에르 Alexis de Spever 士貝耶 50, 60, 65, 73, 98, 100, 106, 227, 235, 322, 390 시모노세키 下關 17 시모노세키조약 下關條約 91 시바 시로 柴四朗 29 시부자와 에이치 澁澤榮一 119, 135, 144~146, 151 시폐상소 時弊上疏 239, 247 신기선 申箕善 20, 65, 319, 343, 347, 350, 353 신무문 神武門 182 신법 新法 276 신석희 申奭熙 342 신응조 申應朝 179 신의상무소 信義商務所 407 신태휴 申泰休 388, 396, 398 신해영 申海泳 316 심상훈 沈相薰 20, 223, 350, 353, 359, 422 심순택 沈舜澤 350, 353 심의석 沈宜碩 206, 216, 297

[0]

아관파천 俄館播遷 43, 48, 55, 58, 66, 98, 99, 192, 193, 251, 299, 322 아사야마 켄조 淺山顯藏 아오키 슈조 靑木周藏 86, 90, 108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304, 420 안경수 安駉壽 19, 34, 40, 63, 199, 201, 206, 214, 217, 224, 236, 296 안기중 安沂中 340 안동소학교 安東小學校 220 안승우 安承禹 49 안영수 安寧洙 236. 388 알렉산더 3세 Alexander Ⅲ 알렉세에프 E. I. Alekseev 99, 104 알렉세예프 K. A. Alexeiev 105, 323 알렌 H. N. Allen 安連 55, 98, 114, 115, 118, 143, 304, 420 알프탄 Al'ftan 60 애국가 愛國歌 319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縣有朋 25, 69, 101, 146 약목역 若木驛 170 양식어장 養殖漁場 157 양향청 糧餉聽 65 양현동소학교 養賢洞小學校 220 양홍묵 梁弘默 394, 405 어세 漁稅 155 어업면허세 漁業免許稅 155 〈어업법〉 〈漁業法〉 157 〈어업에 관한 협정〉 〈漁業에 關한 協 定〉 157 어업협회 漁業協會 156 어용선 魚瑢善 401, 425 어윤중 魚允中 20, 92, 198, 251 언더우드 H. G. Underwood 元杜尤 42, 179 언사소 言事疏 235

엄상궁 嚴尙宮 55, 99 유길준 兪吉濬 40, 47, 179, 181, 183, 엠벌리 H. Emberly 198, 250, 276, 299 305 엠파이어 트러스트회사 유 맹 劉 猛 237, 367, 388Empire Trust Company 121 유인석 柳麟錫 48 유학주 兪鶴柱 여규형 呂圭亨 340 389 연좌법 連坐法 육영공원 育英公院 283 246, 343, 347, 349 염중모 廉仲模 237, 388 윤규섭 尹奎燮 214 영국신디케이트 British Syndicate 윤길병 尹吉炳 400 윤석우 尹錫禹 153 37, 42 영은문 迎恩門 윤용구 尹用求 250, 293 353, 423 오경석 吳慶錫 윤용선 尹容善 350, 353, 355, 356, 359, 215 오기하라 히데지로 荻原秀次郎 368 35 오세창 吳世昌 206, 215 윤웅렬 尹雄烈 42, 97, 179 오오쿠마 시게노부 大隈重信 29 윤정구 尹定求 150 오토리 가이스케 大鳥圭介 138 윤치호 尹致昊 63, 97, 179, 183, 222, 오카모도 류노스케 岡本柳之助 30. 224, 230, 235, 237, 250, 270, 273, 274, 304, 32, 35, 93 310, 334, 338, 350, 365, 373, 387, 389, 399, 오코너 O'coner 46,85 409~411, 421, 422 오페르트 Ernst Oppert 《윤치호일기》 《尹致昊日記》 387 와타나베 다카지로 渡邊鷹次郎 237 33 윤태흥 尹泰興 왕비시해사건 王妃弑害事件 59 윤하영 尹夏榮 352, 365, 388 외인부대 外人部隊 윤효정 尹孝定 67, 226 346 128, 131, 148, 152, 용암포 龍岩浦 126 은산금광 殷山金鑛 우각리 牛角里 119, 143 165 우범선 禹範善 34, 37, 42 을미의병 乙未義兵 42 우치다 사다즈치 内田定槌 35, 37 의병 義兵 49,65 운산광약 雲山鑛約 114 의병봉기 義兵蜂起 179 운산금광 雲山金鑛 의병운동 義兵運動 114, 116, 148, 160 48, 97 283 〈의주전선합동〉 원산학사 元山學舍 〈義州電線合同〉 137, 원정회의 原定會議 213 159 월연금제도 月捐金制度 238 《의회통용규칙》 《議會通用規則》 363 웨베르 Karl I. Waeber 韋貝 이강년 李康季 19, 51, 48 64, 73, 82, 95, 98, 100, 123, 322 이건호 李建鎬 235, 324, 337, 354, 365, 웨베르-고무라 覺書 Waeber一小村 366, 370, 388, 422, 425 Memorandum 62, 101, 142 이경직 李耕稙 36 위테 S. I. Witte 70, 87, 106, 322 이계필 李啓弼 206, 216 윌킨슨 W. H. Wilkinson 46 이규홍 李奎泓 42 유 근 柳 瑾 396 이근배 李根培 214 유기환 兪箕煥 129, 162, 387, 397, 398, 이근영 李根永 224 422 이근호 李根澔 201, 411

이기동 李基東 374, 387, 422	이 척 李 拓 37
이노우에 카오루 井上馨 19,43,89,	이최영 李最榮 199
93	이춘영 李春永 49
95 이도재 李道宰 45, 65, 398	이군경 子春水 45 이태리-한국광업회사 Societa Italiana
이두황 李斗璜 42	Miniere Corea-Italy Syndicate 141
이다청 字子項 42 이바노비치 브리너 J. I. Bryner 124	
	이태리 식민회사 La Societa Coloniale
	Italiana 141
97, 99, 100, 179, 192, 251	이토 미요지 尹東巳代治 38
이상재 李商在 201, 224, 235, 237, 324,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7,43,96,
334, 370, 373, 388, 391, 394, 422	101, 109, 135, 145
이석열 李錫烈 425	이하영 李夏榮 42,179
이 설 李 偰 49	이학균 李學均 179
이성열 李聖烈 20	이헌영 李鑩永 398
이소응 李昭應 48, 55, 97	이호익 李鎬翼 390
이승구 李承九 198	이홍장 李鴻章 17,69,82
이승만 李承晩 232, 327, 345, 422, 425	이홍장-라디겐스키협정 李鴻章-
이승업 李承業 185, 214	Ladygensky協定 50
이완용 李完用 19, 40, 63, 97, 100, 116,	이화양행 怡和洋行 Jardin Matheson &
122, 144, 179, 183, 201, 206, 214, 224,	Co. 130
236, 251, 296, 338	이회 里會 269
이용익 李容翊 159, 246	인천박문회 仁川博文會 265
이용직 李容稙 377	인터내셔널 컴퍼니 International
이원긍 李源兢 340	Company 132
이원역 伊院驛 170	일본군용전신소 日本軍用電信所 139
이유인 李裕寅 341	일산역 一山驛 169
이윤용 李允用 20, 40, 63, 97, 100, 179,	일진회 日進會 376
199, 201, 296	임병길 林炳吉 392
이은찬 李殷瓚 48	임진수 林鎭洙 237
이인우 李寅祐 223, 350, 353, 359	입전 笠廛 220
이재면 李載冕 40	입헌군주제 立憲君主制 247
이재순 李載純 42,63,350	
이재정 李在正 216	[太]
이종건 李鍾健 390, 400, 422	• •
이주회 李周會 29,32,42	자강독립론 自强獨立論 258
이준용 李埈鎔 42,54,58,98	자동의사회 子童義士會 417
이즈볼스키 A. P. Izvol'skii 108	자전거운동 自轉車運動 223
이차개회 離次開會 355, 356, 369, 376,	〈잠정합동조관〉 〈暫定合同條款〉
399	113, 144
이채연 李采淵 120, 179, 183, 201, 206,	잡곡전 雜穀廛 220
214, 224, 296, 351, 377	장봉환 張鳳煥 332, 345, 359
, , ,	00元 1次/两(/大 002,040,000

265,

장 붕 張 鵬 232 《조선휘보》 《朝鮮彙報》The Korean 재기가감자 材器可堪者 423,424 Repository 195, 201 재령철광 載寧鐵鑛 140 조성협 趙性協 216 저포전 苧布廛 220 조세법률주의 租稅法律主義 272 전규환 田圭煥 373 조오단 I. N. Iordan 朱爾典 132. 〈전무학도규칙〉 〈電務學徒規則〉 161 323 〈전보장정〉 〈電報章程〉 138 조인승 曺寅承 97 절영도 絶影島 255, 270 〈조일통상장정〉 〈朝日通商章程〉 154. 절영도 조차 絶影島 租借 325 170 접빈위원 接賓委員 241 〈조일통어장정〉 〈朝日通漁章程〉 155 정 교 鄭 喬 327, 333, 338, 365, 370,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淸商民水陸 388 貿易章程〉 154 정낙용 鄭洛鎔 328,403 조한우 趙漢禹 232, 237, 338, 345, 389 정동구락부 貞洞俱樂部 190, 191, 207 조희연 趙羲淵 19, 40, 42, 47, 92, 98, 198 정동클럽 貞洞클럽 93 조희일 趙熙一 377 정동파 貞洞派 19.98.180.181 좌수 座首 275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272 정병하 鄭秉夏 40, 185, 189, 198 정성우 鄭惺愚 198,199 주간토론회 週間討論會 222 정약용 丁若鏞 주시경 周時經 269 316 정영석 鄭映錫 199 〈중국윤양조선자설부산지한성육로 전선 정치어장 定置漁場 157 의정합동〉 〈中國允讓朝鮮自設釜山之 정항모 鄭恒謨 237, 345, 388 漢城陸路 電線議定合同〉 159 정현철 鄭顯哲 159, 206, 216 중추원 中樞院 273, 276, 416, 422 《제국신문》《帝國新聞》 394 「중추원관제개정안」 「中樞院官制改正 제소위원 製疏委員 240 案」 370 제중원 濟衆院 220 「중추원신관제」 「中樞院新官制」 「조규 2안」 「條規 2案」 367 지석영 池錫永 316,340 조동윤 趙東潤 398 지전 紙廛 220 조병세 趙秉世 328,390 직산금광 稷山金鑛 133, 148, 149, 151, 조병식 趙秉式 246, 323, 355, 368, 387, 165 389, 391, 396, 419, 422 〈직산금광채굴합동조약〉 〈稷山金鑛採掘 조병직 趙秉稷 63, 199, 335 合同條約〉 150 조병호 趙秉鎬 334, 353 직조국 織造局 191 조석윤 曺錫允 198 진명회 進明會 376 조선광업회사 朝鮮鑛業會社 116 진신회 搢紳會 376 《조선신보》 《朝鮮新報》 196 진위대 鎭衛隊 조선은행 朝鮮銀行 337 조선전보총국 朝鮮電報總局 138,159 [ㅊ] 조선해수산조합 朝鮮海水産組合 157 조선협회 朝鮮協會 190,191 찬양회(순성회) 贊襄會(順成會)

282, 376, 391

창성금광 昌城金鑛 141 창원금광 昌原金鑛 133, 148 채서의식 採西意識 182 철도부지 鐵道敷地 168 청일전쟁 淸日戰爭 17,87 청포전 靑布廛 220 《체미오십년》 《滯美五十年》 299 총대위원 總代委員 241 총대위원제 總代委員制 240 최경환 崔景煥 319 최광옥 崔光玉 316 최병환 崔炳桓 359 최익현 崔益鉉 423 최정덕 崔廷德 345, 388, 422, 425 최정식 崔廷植 366 춘생문사건 春生門事件 42, 44, 97, 179, 207 츠키나리 히카루 月成光 29 친러내각 親露內閣 63 친목회 親睦會 376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306 친위대 親衛隊 41 칭제건원 稱帝建元 227

[7]

카시니 A. P. Kassini 카프니스트 D. A. Kapnist 76, 83, 102 케르베르그 P. Kehrberg 克培 83 코로소브스키 Kolosovsky 123 코르프-지노비에프회담 Korf-Zinoviev 會談 50 코리안 신디케이트 Korean Syndicate 콜브란 A. H. Collbran 骨佛安 119, 120, 153 쿠리노 신이치로 粟野愼一郎 110 클리인 F. Krien 口麟 129, 162, 338

[≡]

타니 칸조우 谷干城 29 타운샌드 W. D. Townsend 陀雲仙 119, 143 태본국권당 態本國權黨 테라자키 타이키치 寺崎泰吉 토론회 주제 討論會 主題 313 토역소 討逆疏 42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 務衙門 127 통상회 通常會 213, 223, 229, 234, 310, 333

[12]

파브로프 A. Pavlow 巴禹路厚 125 파성관 巴城館 35 파세트 J. Sloat Fasset 116 패조류어장 貝藻類漁場 157 팽한주 彭翰周 206, 216 평양석탄광 平壤石炭鑛 140 평양진위대 平壤鎭衛隊 220 평의회제도 評議會制度 239 폐정개혁안 弊政改革案 280 포전 布廛 220 포코틸로프 Pokotilov 70 푸트 Lucius H. Foote 福德 114 플랑시 C. V. de Plancy 337 피블리이유회사 Compagnie Fiveslille 貴務林公司 135, 140 피어스 A. L. Pearse 畢爾思 132, 153 피어스 Aillerd Ide Pierce 皮於瑞 115

[ㅎ]

하미전 下米廛 220 하야시 곤스케 林權助 148,150

현제창 玄濟昶 하야시 타다시 林董 18, 90, 330 237, 388 한국개발회사 韓國開發會社 Korea 현 채 玄 采 319 현회 縣會 Development Co. 119, 143 269 현흥택 玄興澤 《한국광업조사보고》 《韓國鑛業調查報 179, 183, 201 협성회 協成會 告》 134 200, 225, 265, 309, 310, 한규설 韓圭卨 223, 369, 377, 398 376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 309 105 호남선 湖南線 한러은행 韓露銀行 241, 326, 329, 334, 호리구치 구마이치 堀口九萬一 32 호시 도루 星亨 336 93 한만용 韓晚容 237 홀기위원 笏記委員 241 홍계훈 洪啓薰 한미전기회사 韓美電氣會社 121 36, 39 한성상무회의소 漢城商務會議所 184, 홍긍섭 洪肯燮 159 185 홍범 洪範 273, 276 《한성순보》《漢城旬報》 269 홍범14조 洪範14條 263, 277 《한성신보》 《漢城新報》 178, 195, 홍우관 洪禹觀 206, 215 196, 300 홍정후 洪正厚 232, 237, 327, 367, 388 한성은행 漢城銀行 홍종우 洪鍾宇 337 405, 414 화전국 華電局 한성전기회사 漢城電氣會社 120 139 (한일전선설치조관속약개정안) 황국상무협회 皇國商務協會 〈韓日 422 황국중앙총상회 皇國中央總商會 電線設置條款續約改正案〉 139 265, 한치유 韓致愈 349, 354, 357, 388, 400 348, 352, 354, 376, 391 함경선 咸鏡線 141 황국협회 皇國協會 265, 366, 372, 376, 함릉가양행 咸陵加洋行 Homle Ringer 400, 403 & Co. 130, 132 황무지 개척권 荒蕪地 開拓權 163 허 위 許 萬 《황성신문》《皇城新聞》 헌의 6조 獻議 6條 234, 247, 277, 377, 황 현 黃 玹 45 389 회표제조위원 會標製造委員 241 헌트 Leigh S. J. Hunt 116 후창광산 厚昌鑛山 141 헐버트 Homer B. Hulbert 42, 190,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 41 195 훈련대 訓練隊 34, 40 현공렴 玄公廉 232, 327, 425 희화선 希化船 128 현덕호 玄德鎬 히멜레프 Lieutenant Hmeleff 327 현상건 玄尙建 120 히트로보 M. A. Khitrovo 51, 60, 82, 현양사 玄洋社 28 101 힐리어 Walter C. Hillier 현제복 玄濟復 206, 216 46

집 필 자

개	요신용하
	I. 러·일간의 각축
1.	삼국간섭과 을미사변강창일
2.	아관파천이민원
3.	러・일의 한반도 분할 획책신승권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1	열강의 이권침탈상이배용
	독립협회 전후 일제의 이권강점이배용
ٽ.	이권수호운동이배용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1.	서재필의 귀국활동과 독립협회 창립한흥수
2.	독립협회의 조직과 운영 한홍수
3.	독립협회의 기본사상 유영렬

Ⅳ. 독립협회의 활동

1.	독립의식의 계발 김신재
2.	국권수호 및 민권보장 김신재
3.	참정권운동과 개혁의 추진신용하
	V.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1.	만민공동회의 활동신용하
2.	수구파 및 외세의 독립협회세력 탄압신용하
3.	독립협회 · 만민공동회운동의 역사적 의의신용하

한 국 사

41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1999년 12월 15일 인쇄
1999년 12월 20일 발행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값 7,600원